

第8次定期代議員大會

活動報告

1968.4.30

全國金屬勞動組合

目 次

1.	宣言與綱領	1
2.	活動概要	3
3.	會議關係	7
4.	組織關係	19
5.	調查關係	67
6.	團體協約關係	85
7.	爭議關係	135
8.	教育文化關係	149
9.	財政關係	165
10.	國際關係	177
11.	其他事項	183

宣 言

國家民族의 自立經濟確立을 双肩에 걸고 百年大計를 이룩하려는
民族大躍進의 黎明은 밝았다

社會의 모든 腐敗와 旧惡을 모라내고 子孫萬代의 繁榮을 期約
하는 第三共和國의 聖스러운 烽火를 先頭로 우리勤勞者는 鞏固한
團結과 " 四. 二五 " 同志發誓서 民主主義精神下에 産業復興의 主
導性을 確保하고 國家發展에 全力을 다하여 勤勞大衆의 福祉社會
建設을 이룩하고자 한다

우리 金屬界에 從事하는 勞動者들은 이제 이나라 온國民의 主
視와 關心裡에 우리들의 鋼鐵基은 同志的 結合체인 全國金屬勞動
組合으로 結束하여 國家再建의 先頭에서 社會正義實現에 果敢하게
前進하며 政治的 經濟的 民主化實踐을 期하고 勞動平和의 繼續的
인 維持로 國家隆盛과 勞動組合發展에 邁進하기를 最剛히 宣言한
다

綱

領

- 一. 우리는 労働組合 組織을 通하여 反共体制을 強化하고 民主的 勝共統一의 先鋒이 된다
- 二. 우리는 備後性있는 政治活動에 參與하고 民主労働運動의 發展을 期한다
- 三. 우리는 單國권 團結로서 労働者의 基本權利를 守護하고 生活水準의 向上을 期한다
- 四. 우리는 健全한 勤勞精神으로서 國家産業發展에 密與하여 自立 經濟確立을 期한다
- 五. 우리는 民主友邦의 労働者와 國際的紐帶를 強化하여 世界平和에 貢獻한다

活 動 事 項

1. 概 要

全國金屬勞動組合의 지난 1年間に 걸친 活動은 주로 組織의 安定을 指向하면서 勤勞條件의 유지 向上은 물론 組合의 財政 自立을 爲하여 노력 하였다

本組合이 事業自體로 重點으로 둔 部分은 未組織分野의 擴大 生活 給與保障等 團體協約의 合理的인 체결等이 었다

各部分別로 年間 組合活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 組織活動

依年度의 組織活動은 未組織分野의 擴大와 非組合員 흡수로 나 누어 볼때 新規로 支部 4個 分會 8個를 新設하고 金屬社, 起亞産炭, 新達工業, 韓國베아칼의 非組合員 흡수하여 組合員 1461名이 증가되었다 (組織附屬 참조)

3. 爭 執

爭執發生 件數는 大韓電線外 4件이 發生하였으며 參加組合員 이 2078名 대부분 要求條件이 賃金引上이 수위를 찾지 하 였다 그러나 爭執 行爲直前に 있어 勞使交渉이 順暢로히 進行 되고 實質的인 대우개선이 成就되었다는것은 단지 爭執 失敗가 아니라 制限된 領域에 있어서는 成功이 아닐수 없다

其中에서도 咸北에 朝鮮企業分會는 企業主에 極한 탄압으로 말

~4~

미아마 会社와 勞組向에 極限狀態에 이르기 實質的인 爭議行爲에 돌입하면서부터 勞使向에 肉白戰을 벌려 都下 言論機關과 勞組団体에 큰 충격을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各關係機關에서 協助로서 要求條件의 관철로 일달과 되었다는 事實은 金屬勞組에 있어 大수독이 아닐수 없다 (爭議 時候 참조)

4. 団体協約

그동안 우리 組合은 主要目標에 하나인 勞使交渉을 活潑히 展開하여온 結果 最近에 되서도 勞使雙方이 団体協約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었음은 勤勞者의 權益保護와 産業平和를 爲하여 是로 기우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으며 今般 勞總에서 설정한 제6회 단체협약 체결 촉진 행사에 있어 본조에서나 이 期間을 통하여 協約의 체결 更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현장 단체협약관계 참조)

5. 教育活動

組合員의 精神分野를 開發하기 爲하여 教育宣傳 活動은 社會의 發展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其比重이 加重되고 있다

自体最高은 지난 67. 12. 11 ~ 15 國際金屬勞聯 (IMF) 후 원으로 傘下 支部, 分會 幹部가 수강 하였으며 勞總主催 實務 訓練講座 및 순회 教育인 一般勞動教育에 傘下 支部, 分會, 幹部 多數가 수강하였으며 特別 組合員과 組合員과에 집중 진행

한 유대를 維持하고 全組合員의 組合活動參與을 促進하기 爲하여 중단된 機關紙發刊을 再發刊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敎宣關係 참조)

6. 調査統計活動

調査統計라는 學術적인 用語라는 勞働組合의 調査統計는 工意識가 必要되는 것이 관우가지가 아니었다 勞働組合의 調査統計는 組合員을 對象으로 賃金과 生計費 또는 生活實施等を 調査하여 勞働組合의 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 重要な 역할을 하게 되었던바 지난해 調査統計活動은 組織內的인 問題와 傘下 組織에 未接으로 보다 精確한 統計를 파악치 못하는데 苦悶한 狀이 있지 않다 (조사관계 참조)

7. 國際活動

國家間에 交流增에 따라 國際活動은 一층 활발해지고 相互協 助아래 共同目的을 追求하고자 노력은 점차 勞動運動에서도 廣 汎되었다

1966年 全國大會에서 國際機構인 國際金屬勞聯(IMF)에 加入 決議하여 67年9月19日 國際金屬勞聯執行委員會에서 韓 國에 加入決議案을 上程하여 正式加入確定이 決定되어 오는 5 月25日 스위스에서 第21回世界大會에 韓國代表로 本組 委員長이 參加하게되어 韓國勞動英屬의한 契機가 되리라고 생각 한 다 (國際關係 참조)

會議關係

代議員名單

所屬支部名	姓 名	所屬支部名	姓 名
金里社支部	崔 鍾 圭	重工業支部	李 熙 鎰
"	李 菊 演	永 義 支部	李 熙 鎰
"	柳 海 宿	"	李 英 珠
"	鄭 泰 受	新進工業支部	鄭 致 道
"	金 章 泰	"	李 智 錫
"	李 文 錫	"	李 英 春
"	金 外 順	金 山	洪 亨 模
"	李 鍾 室	"	李 文 教
"	車 道 中	什 意	李 奎 聖
永登浦支部	金 炳 屯	"	朴 德 壽
"	趙 王 行	"	李 武 山
"	辺 始 鉉	三沙電機	洪 勝 候
"	金 正 珍	"	李 珠 烈
"	成 鎮 甲	三 勝	洪 壽 明
"	李 起 鳳		
國鐵支部	朴 昌 奎		
"	李 成 天		
"	吳 三 烈		
重工業	孫 正 植		
"	辛 九 鎬		
"	柳 川 元		

~10~

1. 代議員大會

1. 全國金屬勞動組合 1967年度 全國代議員大會는 67. 4. 27.

上午 10時부터 什魯特別市 中區 太平路 所在 大韓建設協會

會議室에서 韓國勞總委員長外 産別勞組任員 多數外 33名의 全

國代議員이 參加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盛了 하였다

(1) 日 時 1963年 4月 27日 上午 10時

(2) 場 所 什魯特別市 中區 太平路 1가 31

(大韓建設協會 會議室)

(3) 出席代議員 50名中 正代議員 33名

음세비 15名 計 48名

會 順

1. 開會宣言 事務局長 許 萬 成

2. 國及儀禮 " "

3. 成員報告 " "

4. 大會進行文朗誦 副委員長 崔 鍾 圭

5. 閉會辭 委員長 朴 世 天

6. 祝 辭 勞動所 勞政局長 許 成 俊

全國化學勞組委員長 朴 永 成

7. 模範組會員表彰 鄭 滄 吳 外 12名 中韓

8. 活動報告 事務局長 許 万 成

9. 會計監査報告 監査委員 朴 丁 德

10. 1966年決算報告 總務部長 李 憲 求

11. 1967年度事業計劃審議 事務局長 남 등

異議없이 박수로써 통과

12. 1967年度 予算審議 全員박수로 通過

13. 規約改正

※ 規約 22條 但를 1966年1月8日에 美任된 任期의
任期는 3年3個月로 한다

위 條項은 前任者에 잔여기간을 継承하여야 할데도 該는

條項은 어느 特定人에 任期를 延長해준다는 인상이 있으므로

로 中央委員會 決議로 삭제 改正할것을 大會에 上程하여

議決結果 贊成 28, 否 4, 기권 1, 計 33로

規約改正 通過

14. 任員選出

委員長 朴 世 天

副委員長 崔 鍾 圭, 金 炳 龍, 李 熙 鎔

事務局長 洪 淳 模

會計監査 朴 丁 德, 李 珣 錫, 姜 俊 錫 以上과

가이 美任된다

~12.

15. 上동과전내의원 선출

収受団 5名과 鄭致展, 李奎雲 선출

16. 협의회재력

市會室考 下午 5時

社 員 労働千葉, 韓國機械株式会社 社長

起運産業株式会社 社長

民主共和黨, 株式会社 金屋社

社 長 韓國労働組合總聯盟

全國電力労働組合

全國出版労働組合

全國利心 "

全國研合 "

全國鐵道 "

全國率頭 "

全國鐵山 "

全國海上 "

全國運輸 "

全國外機 "

全國台丹 "

全國勇氣 "

全國自動車 "

議 長 朴 世 天

司 會 斯 万 成

" 李 憲 求

記 録 "

求 鉉 模

中央委員名單

支部名	姓名	支部名	姓名
委員長	朴世天	木浦支部	朴鉉
副委員長	崔鍾圭	慶北	李成學
	金炳堯	三陟	洪源明
	李熙銘	慶南	
事務局長	洪道煥	金山	
金星社支部	鄭溫吳	峰州	河永華
重工業	朴允興	忠南	柳振秀
	辛九鎬		
韓國機械	朴昂奎		
耕進工業	鄭敦茂		
韓國州아리	姜俊錫		
永登浦	趙王行		
	李敬壽		
什邑	李在雲		
	李武山		
京畿	文益模		
全南	李義寬		

2. 中央委員會議

公 報 日 子	回 數	議 題	決 議 內 容
67 2.26	18	1. 中央委員資格 問題	1. 規約第 19 條 但書에 依하여 義務金 納付 실적에 依하여 자격 인정 결의
		2. 三洋電機支部 認定	2. 2.14 설치한 三洋電機支部 認定承認 (박수) 支部長 洪 勝 侯
		3. 代數員資格問 題	3. 義務実績에 依하여 正代數員 으로 認定하고 나머지는 備 위로 認定 결의
		4. 模範組合員表 彰	4. 傘下 支部에서 추천한 節 外 1,2 名 表彰狀 수여키로 결의
		5. 全國大會會順 審議	5. (1) 會計監査 유키협회사 辭職 으로 任員補選 會順에 上입 키로 決議 (2) 規約改正 會順상입키로 결 의

中央執行委員名單

職 位	姓 名	職 位	姓 名
委 員 長	朴 世 天	調 查 部 長	趙 三 行
副 委 員 長	崔 鍾 圭	法 規	辺 始 敏
〃	金 炳 竜	争 訟	尹 範 重
〃	李 熙 銘	國 際	李 澤 遠
事 務 局 長	洪 淳 模	婦 女	金 外 順
總 務 部 長	李 翹 求		
組 織	姜 春 吉		
教 宣	孫 正 植		

3 中央執行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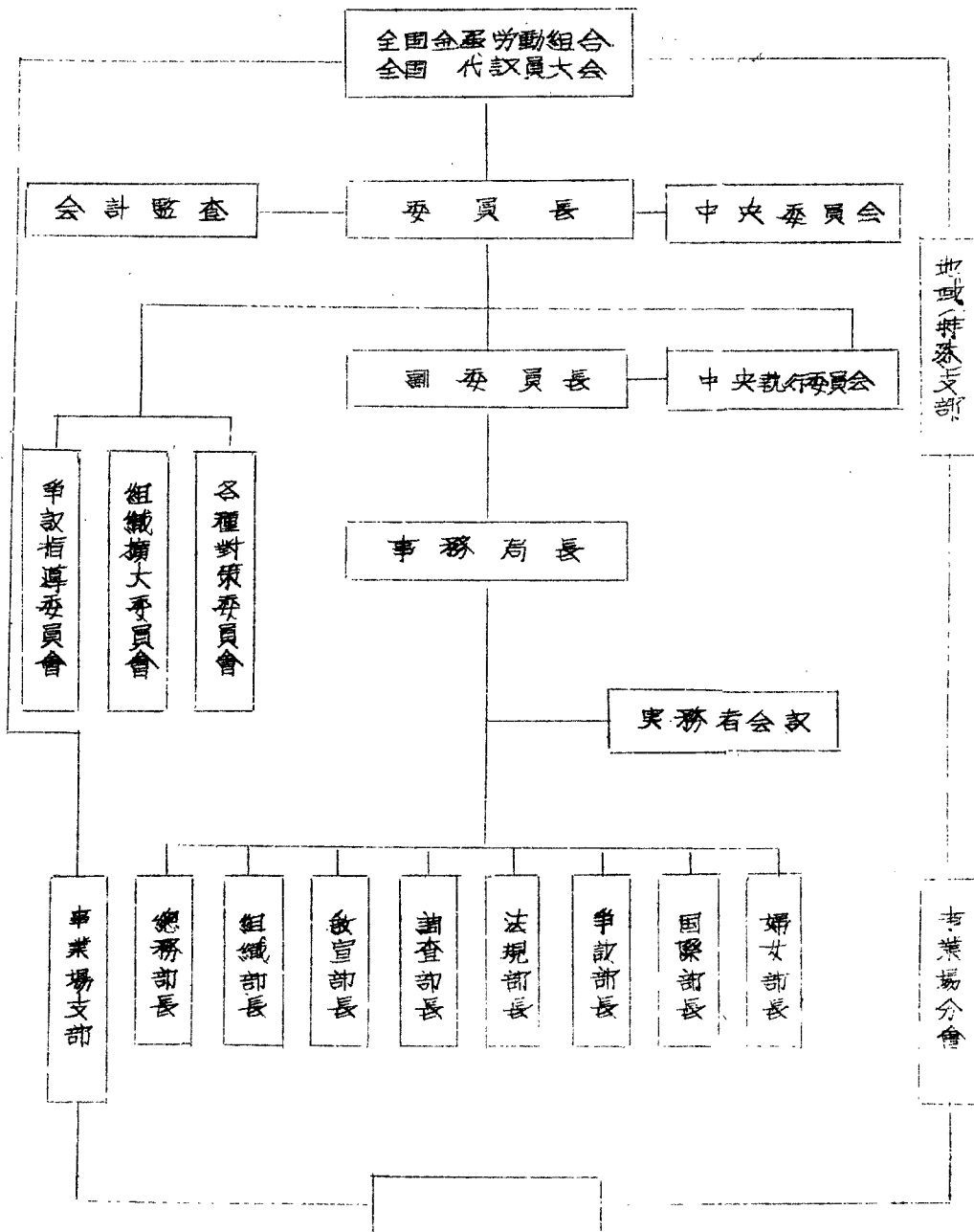
會 日 字	回 數	議 題	議 決 事 項
67. 4.29	1 次	1. 部署部長蒞庭	1. 總務部長 李 義 求 組職, 姜 春 吉 教室, 孫 正 植 法規, 辺 始 敏 調查, 趙 壬 行 學教, 尹 康 重 國際, 李 沃 愛 婦女, 金 外 順
		2. 財政關係	2. 財政狀況이 여의치 않아 運營 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打南渠 를 教長團에 委託
67. 10.17	2 次	1. 勞總義務金未 納에關한件	1. 傘下支部에 未納義務金 목록을 하여 徵收하면 納付기로 議決
		2. 勞總大會參加 의件	2. 委員長 1名 參加 費를 議決
		3. 新進支部富平 工場勞使紛糾 의件	3. 5名 解雇者에 對해서 當해지부 에서 救濟하고 紛糾에 수습을 하고 本組에서 指導하기로 議決

會 日	議 字	回 數	議 題	議 決 事 項
			4. 支部長認定 5. 支部代表引揚 報告 6. IMF教授招 請條件 7. 教育準備委員 구성 8. IMF加入確 定	4. 慶南支部長 河 吉 四 木浦特殊支部長 朴 鉉 全南支部長 李 義 憲 京畿支部長 文 益 模 5. 事務局長 組織部長 日本全金同 盟年次大會 參禱結果報告 IMF원조 教育策을 決定 教育期間 67. 12 月中 6. IMF所屬 教授 3名招請條件를 議決 7. 教監部長、總務部長、國際部長 法規部長兼定 8. 66. 9. 10 全國大會에서 IMF 加入 決議에 對하여 67. 9. 16 IMF執行 委員會에서 加入確 定通報生명
68. 2. 22		三 次	1. 計畫支部、行 政조직의件	1. 調查團구성 事務局長、調查部長、法規部長

会 報 日 字	同 数	報 題	報 決 事 項
			教員部長、國際部長 以上 5 名 調査期間 68. 2. 23 ~ 25
		2. 本組大会日字	2. 4月25日 以内 召集
		3. 支部以分会認 准	3. 酒井支部長 河 永 洋 影島鉄工分会長 崔 綿 九 慶北支部長 李 成 学 重工業支部長 朴 元 英
		4. 中央委員資格 問題	4. 規約41 依據 資格認定書以是 議決
		5. 横更組合員手 続 (3. 10 期)	5. 副委員長 李恩錫同志 手続完了 是 議決
		6. 11. F大会後 加引件	6. 委員長 朴世天同志 参加決定
		7. 傘下支部 分 会大会 開催 日程	7. 本 組 4月中 支 部 3月中 分 会 2月中 予定
		8. 義務金徴収州 間引件	8. 未納義務金納付督促 予定

組 織 関 係

組織体系 及 機構表



本部任員名單

職 位	姓 名	學 歷	生 年 月 日	備 考
委 員 長	朴 世 天	中卒	1931. 6. 13	韓 國 棧 板 支 部
副委員長	崔 鍾 圭	大卒	1931. 5. 13	金 星 社 "
"	金 炳 龍	高退	1932. 12. 29	永 登 浦 "
"	李 熙 鎔	大卒	1935. 12. 26	重 工 業 "
事務局長	洪 亨 模	高卒	1922. 11. 29	益 山 "
總務部長	李 憲 求	中卒	1937. 3. 2	韓 國 棧 板 "
爭訟部長	尹 鉅 星	高卒	1934. 5. 5	京 畿 "
組織部長	姜 春 吉	大退	1936. 9. 2	新 進 工 業 "
法規部長	辺 始 敏	中卒	1934. 8. 19	永 登 浦 "
教育部長	孫 正 植	高卒	1930. 1. 15	重 工 業 "
調查部長	趙 王 行	大退	1930. 7. 23	永 登 浦 "
國際部長	李 澤 龍	大卒	1937. 11. 9	重 工 業 "
婦女部長	金 外 順	中卒	1942.	金 星 社 "
會計監査	朴 丁 德	高卒	1918. 5. 23	慶 北 "
"	李 潤 錫	"	1930. 6. 25	新 進 工 業 "
"	姜 俊 錫	中卒	1933. 5. 7.	韓 國 排 衣 部 "

支部所在地

支 部 名	支 部 長 (分 会 長)	設置日付	事務所所在地
金星社事業場支部	崔 鍾 圭	63. 5. 4	釜山市東萊區溫來洞 707
重工業 "	朴 允 興	62. 3. 26	仁川市松岷洞 1
韓國機械 "	朴 世 天	62. 5. 12	" 万石洞 6
新進工業 "	鄭 敏 慶	63. 9. 12	釜山市釜山鎮區田浦洞 83
三洋電機 "	金 炳 錫	67. 2. 22	서울永登浦區文萊洞
永登浦地域支部	金 炳 龍	61. 9. 9	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 5가 34
서울 "	李 奎 雲	61. 12. 16	서울中區乙支路 6가 21
京畿 "	文 益 模	61. 9. 12	仁川市花水洞 多
釜山 "	洪 壽 模	65. 2. 19	釜山市釜山鎮區凡川洞 1153
慶南特殊 "	空 希	63. 3. 30	馬山市月南洞 1街 1
慶北 "	李 成 尊	61. 10. 15	大邱市中區草田洞 2가 201
三陟 "	洪 壽 明	61. 9. 13	三陟郡北坪邑酒堂里 33
安城 "	空 希	65. 11. 30	京畿安城邑錦山洞 50
全南 "	李 義 憲	61. 10. 16	光州市不老洞 131
木浦 "	朴 鉉	67. 6. 25	木浦市大義洞 3街 3
濟州 "	河 永 奉	67. 12. 14	濟州市健入洞 973
韓國海外支部	姜 俊 錫	68. 3. 21	仁川市山谷洞 125
影島鐵工 分會	崔 鎰 九	67. 12. 17	釜山市影島區太平洞 2가 36
忠南地域支部	柳 振 秀	69. 3. 14	大田市三省洞 150

支部分會任員名單

韓國機械支部

職 位	姓 名	備 考
支 部 長	朴 世 天	
副 支 部 長	朴 晶 奎	
"	鄭 萬 善	
事 務 長	李 相 元	
總 務 部 長	李 成 天	
組 織 部 長	宋 昌 模	
調 査 部 長	劉 貞 植	
宣 伝 部 長	劉 永 基	
爭 訟 部 長	金 在 興	
體 育 部 長	李 牛 年	

金星社支部

支 部 長	崔 鍾 圭	
副 支 部 長	姜 基 泰	
"	呂 明 九	

職 位	姓 名	備 考
副 支 部 長	李 南 演	
"	柳 海 春	
事 務 長	鄭 逢 良	
總 務 部 長	金 鍾 吉	
組 織 部 長	金 龍 泰	
調 査 部 長	文 大 奎	
宣 伝 部 長	李 文 鎬	
爭 訟 部 長	吳 珥 均	
婦 女 部 長	金 外 順	
司 正 委 員	洪 蒼 松	
"	崔 文 永	
"	鄭 仁 錫	

三洋電機支部

支 部 長	金 炯 錫	
副 支 部 長	金 京 培	
"	金 明 鎬	
事 務 長	이 今 鎰	

職	位	姓	名	備	考
總務部	長	김	현	문	
組織部	長	원	태	식	
請查部	長	강	창	득	
宣傳部	長	최	응	희	
爭執部	長	김	홍	성	
體育部	長	이	건	우	
婦女部	長	박	복	래	
司正委員		朴	興	植	

三防支部

支	部	長	洪	淳	明
副支	部	長	金	鍾	基
	"		柳	東	振
市務	部	長	宋	戰	一
運營	委員		金	振	亨
	"		金	鍾	基
	"		柳	東	振
	"		朴	榮	基
	"		金	源	範

職 位	姓 名	備 考
司 正 委 員	金 興 萬	
"	李 善 次	
"	李 大 亨	

永登浦支部

支 部 長	金 炳 龍	
副 支 部 長	趙 王 行	
"	李 教 壽	
事 務 長	李 相 潤	
總 務 部 長	辺 始 鉉	
組 織 部 長	金 正 培	
宣 伝 部 長	權 今 司	
爭 訟 部 長	李 奇 鳳	
調 査 部 長	咸 領 甲	
体 育 部 長	宋 敏 錫	
婦 女 部 長	崔 熙 子	
司 正 委 員	金 俊 奎	
"	李 百 斗	
"	吳 重 赫	

永登浦地域支那傘下分會長

分 会 名	分 會 長	備 考
起亜産業 分会	金 炳 福	
大韓電線 "	趙 圭 行	
東洋미성 "	尹 相 敷	
大韓重機 "	金 正 培	
日新産業 "		
新光企業 "	崔 彰 源	
東洋鋼鐵 "	姜 喆 一	
國際互信 "	趙 仁 衡	
起陽産業 "	大 道 植	
韓國電力機械 "	咸 鎮 甲	
柳城機械 "		
東洋工業 "	崔 容 河	
三光工作 "	金 俊 重	
韓永産業 "	朴 彰 結	
李永興鐵工 "	大 道 植	
大韓機工 "		
第一미성 "	李 義 松	
韓國特殊工具 "	李 壽 福	

分 会 名	分 会 長	備 考
大韓對峙 分会	李 元 載	
隆盛스런레스 "	呂 才 牙	
進亞産業 "	宋 鴻 達	
東洋棧板	李 柄 衆	

京畿支那傘下分會長

利川電棧 分会	文 益 模	
韓固工業 "	李 英 沫	
韓固細業 "	尹 範 重	
京城工作 "	尹 基 浩	
富平製鋼 "	李 亨 善	

京畿支部

支 部 長	文 益 模	
副 支 部 長	尹 範 重	
"	姜 均 範	
事 務 長	李 英 沫	
總 務 部 長	宋 賢 淳	

職 名	姓 名	備 考
組 織 部 長	李 孝 善	
調 査 部 長	池 明 植	
宣 伝 部 長		
争 訟 部 長	尹 基 浩	
司 正 委 員	장 인 수	
"	심 재 욱	
"	이 철 환	

서邑支部

支 部 長	李 奎 雲	
副 支 部 長	朴 應 導	
"	張 二 漢	
事 務 長	李 武 山	
司 正 委 員	尹 成 煥	
"		

서邑支部傘下分會長

京城鮮物 分会	劉 貞 楷	
公打亭棧 "	張 三 漢	

分 会 名	分 会 長	備 考
東洋精製 分会	朴 德 淳	
東亞金蛋 "	趙 鎔 範	
東洋社社 "	尹 成 煥	
奉信鎔物 "	召 趙 在	
冀國通信 "	崔 亨 淳	
太陽棧械 "	趙 東 郁	
豐星電棧 "	李 在 椿	

釜山支部

支 部 長	洪 淳 模	
副 支 部 長	朴 尚 漢	
"	이 昆 五	
司 正 委 員	朴 浩 楸	
"	召 平 之	
"		

釜山支部傘下分会

日進棧械 分会長	朴 尚 漢	
----------	-------	--

分 会 名	分 会 長	備 考
培昌工業 分会	鄭 永 址	
新生工業 "	金 武 珍	

慶北支部

支 部 長	李 成 學	
副 支 部 長	朴 丁 德	
事 務 長		
司 正 委 員	白 政 憲	
"	李 申 宰	
"	玉 青 一	

慶北支部傘下分會

三南工業 分会長	李 永 會	
朝鮮鐵工 "	朴 興 錫	
朝鮮企業 "	林 泰 乙	

慶南支部

支 部 長		
副 支 部 長	姜 榮 通	

職 位	姓 名	備 考
司 正 委 員	金 容 守	
運 營 委 員	田 乙 守	
"	朴 元 培	
"		
"		
"		

慶南支部分會長

進一棧械 分会	朴 元 培	
中央棧械 "	田 乙 守	

安城特殊支部

支 部 長 代 理	金 日	
-----------	-----	--

全南支部

支 部 長	李 義 憲	
副 支 部 長	韓 正 寅	
事 務 長		

職 位	姓 名	備 考
司 正 委 員	徐 炳 文	
"	金 天 奎	

全南支部傘下分會長

國 光 分 會	徐 炳 文	
薛 一 "	申 正 炎	
薛 興 "	金 天 奎	
大 洋 "	安 亨 永	
全南貨物 "	朴 亨 龍	
光 養 "	宋 煥	

新建工業支部

支 部 長	鄭 致 茂	
副 支 部 長	李 潤 錫	
"	楊 鍾 奎	
市 務 長	姜 春 吉	
司 正 委 員	金 飛 植	
"	金 祥 鉉	
"	此 宗 万	

木浦特殊支部

職 位	姓 名	備 考
支 部 長	朴 鉦	
副 支 部 長	金 鍾 石	
事 務 長	姜 達 秀	
司 正 委 員	趙 昌 洙	

濟州支部

支 部 長	河 永 奉	
會 計 監 査	朴 正 植	
"	金 榮 珍	

釜山鐵工直轄分會

分 會 長	崔 鎭 九	
副 分 會 長	宋 興 福	
"		
司 正 委 員	李 丁 榮	
"	金 春 植	

忠南地域支部

支 部 長	柳 根 秀	
-------	-------	--

職 位	姓 名	備 考
副 支 部 長	李 銀 綺	
事 務 長	정 남 순	
總 務 部 長	朴 成 万	
組 織 部 長	朴 주 경	
宣 伝 部 長	배 경 구	
爭 訟 部 長	윤 의 응	
調 査 部 長	유 철 종	
婦 女 部 長	최 선 녀	

韓國배 아령支部

支 部 長	姜 俊 錫	
副 支 部 長	신 권 응	
"	김 재 원	
事 務 長	나 영 천	
司 正 委 員	이 환 권	
"	김 정 응	
"	이 정 길	

支部別月別組合員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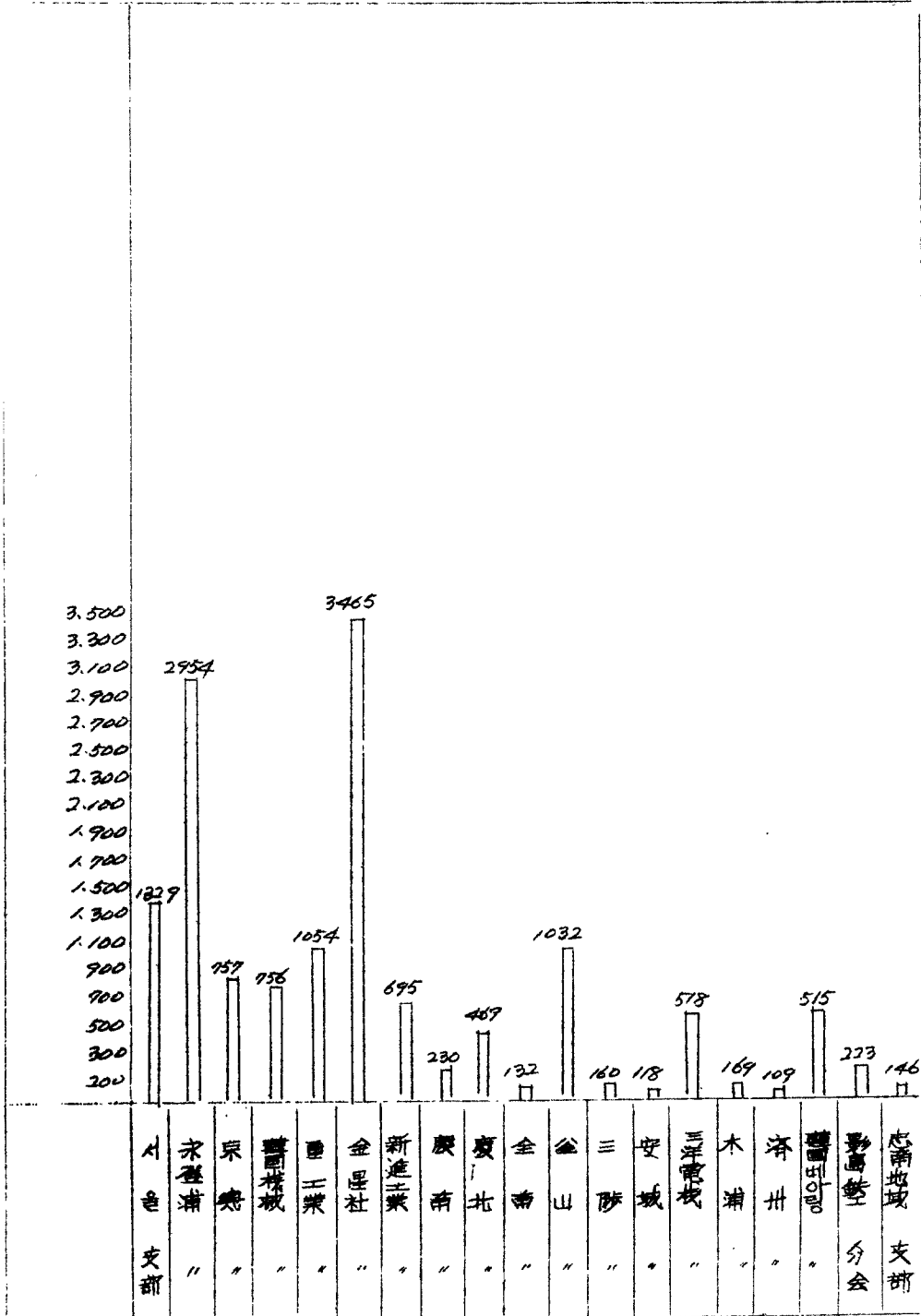
支 部 名		区 分		月 別			
		月 別		4	5	6	7
支	部	支	部	1110	1.398	1.110	1.227
永 登 浦	"			3.196	3.199	3.199	2.704
永 鐵	"			1.096	1.096	968	968
韓 國 棧 棧	"			825	826	826	826
重 工 業	"			1.052	1.052	1.052	926
金 星 社	"			3.429	3.680	3.680	3.703
新 進 工 業	"			662	560	540	540
慶 南	"			213	213	213	213
慶 北	"			200	200	200	200
全 南	"			132	132	132	132
釜 山	"			1.320	1.320	1.320	1.320
三 陟	"			160	160	160	160
安 城 特 殊	"			120	120	120	120
三 洋 電 機	"			523	518	518	518
木 浦 特 殊	"					127	127
東 洋 內 燃 機	"						
濟 州	"						
影 島 鉄 工	分 會						
韓 國 財 政 廳	支 部						
計				14,038	14,474	14,165	13,686

1968. 3. 31 現在

組 合 員 現 況							
8	9	10	11	12	68 /	2	3
1.229	1.229	1.229	1.229	1.229	1.229	1.229	1.328
2.597	2.597	2.601	2.705	2.705	2.705	2.724	2.954
968	968	968	968	968	997	997	757
826	826	826	826	826	826	826	756
963	963	963	963	982	982	1.030	1.054
3.703	3.853	3.904	3.904	3.904	3.536	3.586	3.465
540	844	844	844	844	844	844	695
213	213	213	213	230	230	230	230
200	200	200	200	200	200	492	469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6	1.326	1.326	1.320	1.320	1.320	1.024	1.032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20	119	118	118	118	118	118
	578	578	578	578	578	578	578
	166	168	168	168	168	168	168
	54	54	45	45	45	45	146
					109	109	109
					222	253	223
							515
13,685	14,170	14,215	14,313	14,349	14,341	14,435	14,854

組合員 現況

1968. 3. 31現在



市道別月別組合員現況

市道名		区分	月別	男			
		男女別	67	4	5	6	7
札幌特別市		男	4,263	4,455	4,167	3,886	
		女	586	660	660	565	
		計	4,829	5,115	4,827	4,451	
金山市		男	3,873	4,019	3,999	4,022	
		女	1,538	1,541	1,541	1,541	
		計	5,411	5,560	5,540	5,563	
廣南道		男	213	213	213	213	
		女	213	213	213	213	
		計	213	213	213	213	
京畿道		男	3,000	3,001	2,865	2,739	
		女	93	93	101	101	
		計	3,093	3,094	2,966	2,840	
茨城道		男	200	200	200	200	
		女	200	200	200	200	
		計	200	200	200	200	
全南道		男	101	101	228	228	
		女	31	31	31	31	
		計	132	132	259	259	
江原道		男	159	159	159	159	
		女	1	1	1	1	
		計	160	160	160	160	
忠南道		男					
		女					
		計					
濟州道		男					
		女					
		計					
						</	

1968, 3. 31 現在

[illegible]

新規支部及分會設置現況

新規組織現況

1967.4.1~1968.3.31

結成日付	事業本名	組合員数	所在地
67. 4. 4	隆盛スミヨシ株式会社	115	서울 永登浦区 松興洞
67. 5. 12	金星社安安養電線工場	191	京畿 安養邑 玄州리 535
67. 6. 25	木浦特殊地域支部	160	全南 木浦市 大義洞3가3
67. 10. 13	進亜産業株式會社	170	서울 永登浦区 文萊洞5가7
67. 12. 13	済州地域支部	500	済州道済州市健八洞 937
67. 12. 17	影島鉄工分会	115	釜山市影島区大平洞2가35
68. 2. 5	豊邑電機工業株式会社	69	서울 城東區 聖水洞1가656
68. 2. 28	大嶺製缶株式会社	12	仁川市南区桃花洞 603
68. 2. 28	朝鮮企業社	400	慶北大田市七星洞
68. 3. 14	忠南地域支部	40	忠南大田市三省洞 150
68. 3. 26	東洋機械株式会社	230	서울 市永登浦区文萊洞6가42

新規支部 및 分會設置現況

1. 金星社 安養電線分會結成

1967. 5. 12 金星社 同一業체인 安養電線分會를 委員長
參席한 가운데 結成하였음

가. 所在地, 京畿安養邑 호계리 555

나. 組合員數, 191名

分會長, 呂 明 九

副分會長, 徐 鎮 國

總務部長, 吳 喜 澤

2. 蓬盛스린리스分會結成 (永登浦支部)

所在地, 서울特別市永登浦區始興洞

組合員數 115名, 結成日序, 67. 4. 4

分會長, 임 시 주

副分會長, 이 성 훈

조 한 경

總務部長, 정 수 남

3. 木浦特殊地域支部設置

結成日序 1967. 6. 25

所在地 木浦市 大義洞 3가3

組合員數	160名		
支部長	朴	鉉	
副支部長	金	鍾	石
事務長	保		留

4. 濟州地域支部設置

1967. 11. 20 韓國勞總濟州道協議會副議長 李洪淑同志才 末
組 다음과 같이 濟州道地域委囑託 依頼要請

1. 金屬分野 組織對象數 濟州市內約 500 名
2. 委囑對象者 河 永 奉
3. 所屬事業場 新興工業社 (代表 孫 昌 式)
4. 委囑에 必要한 兵籍書類

- (1) 履歷書 / 通
- (2) 身元證明書 / "
- (3) 身元保証書 / "
- (4) 在職證明書 / "

添付하여 委囑狀發給

5 1967. 12. 13 濟州市 一徒二洞 結成

支部長	河	永	奉
會計監査	朴	正	植
	金	榮	珍

事務所, 濟州道濟州市健八洞 937

5. 影島鉄工直轄分會設置

1967. 12. 7 釜山市 影島區 南港洞 事務所會談室에서
崔鍾圭 副委員長 立會下에 組合員 115名 參加 直轄分會 結
成하여 1967. 12. 23. 認准申請하여 釜山地域支部長의 承認
에 對하여 意見을 물은바 釜山地域支部로서는 現地 現況을 勘
察하여 볼때 直轄分會로 設置하는 것에 異議가 없다하여 認准
承認하였음

分 會 長 崔 鎰 九

副分會長 金 相 元

來 興 福

總務部長 吳 城 珍

6. 豊星電氣分會結成 (서울支部)

所在地 서울特別市城東區聖水洞 1가 656

事業体名 豊星電機工業株式會社 (黃 奎 ≡)

結成日付 1968. 2. 5

組合員數 100名

分 會 長 李 在 春

副分會長 吳 起 奉

總務部長 朴 柱 弘

7. 大韓製缶分會結成 (京畿支部)

所在地、 仁川市 南區 桃花洞 603

業名、 大韓製缶株式會社

結成日、 1968. 2. 28.

分會長 李 完 世

副分會長 金 景 煥

司正委員 이 상 만

8. 朝鮮企業分會結成 (慶北支部)

(1) 1968. 1. 20 韓國勞總慶北道協議會事務局長 金周鎬同志

才 來組 大邱市 七里洞에 所在하고 있는 朝鮮企業社에 勤勞하고 있는 林來乙로부터 組織, 結成을 要請하는 要旨, 從業員約 600 名

(2) 1968. 1. 25 本組 敎宣部長 孫正植同志를 現地에 踏査次 出張하여 從業員面接하여 加入願書 樣式 400枚를 勞組 結成簡次를 轉送하고 2月15日頃 結成을 보자로 合意

(3) 1968. 2. 28 組合員約 300名 卅-스에 分票 慶北支部, 事務所 水平會館에서 結成式을 舉行 分會長 林來乙 送任, 會社에서 보복措置로 分會長以下 幹部 3名을 不當解雇하여 賃金引上 30% 要求와 不當解雇 卽히 爭執提起, 現在 斗爭中

9 忠南地域支部設置

(1) 1968. 3. 13. 韓國勞總 忠南道協談會로부터 市外電話로 大田市内 韓國理研會社 從業員으로부터 勞組結成을 要求 한다는 内容으로 加入願書 및 諸般 結成에 必要한 書類를 具備하여 現地에 出張을 依頼

(2) 68. 3. 13 下. 3時 本組 總務部長 李憲求同志가 現地에 出張 從業員 柳根秀外 3名을 面接 3. 14. 下 4時에 結成大會를 하기로 合意

(3) 68. 3. 14 下. 4時 運輸勞組 忠南支部 勞動會館에서 結成大會를 開催하려고 하되 次 會社側 重役 副社長以下 約 20名 이 大會場에 와서 從業員을 解散하는 것을 忠南道協談會에서 鐵道勞組大田支部 組合員을 動員 會社側을 圮사 시키고 組合員 40名 參市한 가운데 創立大會開催

68. 3. 14 下 5時

事務所 大田市 三省洞 50

支部長

柳 根 秀

副支部長

李 根 浩

事務長

鄭 南 壽

韓國배아랑支部昇格

本 勞動規約 第7條 /項에 地域 또는 事業場에 組合員加入員數 500名以上 確保로서 支部를 設置한다는 規程에 依據 京畿支部傘下에 所屬되었던 韓國배아랑分會才 /月末 組合員數 270名이 있던바 88. 3. 13 자로 加入組合員總數 515名 確保로서 韓國배아랑分會 運営細則第10條에 依據 代議員 姜호선外 3/名 連署捺印하여 分會臨時代議員大會를 召集 要請하여 3. 21 支部昇格大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이 任員이 選出되었음

支部長	姜 俊 錫
副支部長	金 戰 源
	申 吉 雄
事務長	羅 榮 燦
司正委員	李 恒 哲
	李 貞 吉
	金 正 雄

11. 進亞産業分會結成 (永登浦支部)

所在地 仁川特別市永登浦區文萊洞 6街7番地
 事業體名 進亞産業株式會社
 結成日字 1967. 10. 13.
 組合員數 170

分會長	宋 鴻 建
副分會長	李 漢 植
總務部長	南 光 祐

12. 東洋棧械分會結成 (永登浦支部)

所在地 仁川特別市永登浦區文萊洞 6街 42

事業體名 東洋棧械工業株式會社

代表者 社長 韓 昌 根

従業員數 約 430名

結成日付 1968. 3. 26

分會長	李 柄 象
副分會長	金 鍾 洙
	韓 世 今
總務部長	安 秉 一

勞使紛糾經緯

- (1) 新進富平工場
- (2) 朝鮮企業社
- (3) 東洋機械

新進自動車 富平工場組織分科経緯

1. 1967.9.6 新進富平工場従業員 鄭挽栄外1名 本組、労働組

合 構成에 처하여 協敎(事務局長、總務部長)

鄭挽栄... 労働組合을 構成하였으니 添込狀紙給을 要

本 組... 新進工業은 釜山、富平工場이 同一企業체로서 釜山

山工場이 勞組가 構成되었으니 勞組를 構成한다면 釜

山工場으로 흡수하는 加入願書만 提出하면 된다는 것

을 說明

鄭挽栄... 釜山에 勞組가 構成된것을 알고 있으며 地域的으로

同一은 여건이 다르며 現地 従業員은 單獨運營을 願

하고 있다.

本 組... 添込을 하되 添込狀 紙給內容은 支部今會 명칭을 記

入하지 않고 組合員 흡수 責任者로 하고 新進釜山支部

長과 協敎해서 決定하기로 合意

組合員 흡수 責任添込者

鄭挽栄、李用叔、韓基奎(3名)

鄭挽栄... 現地에 가서 同志들과 協敎해서 總會日字를 決定하고

自己 子定日是 9.9項 하였다고 하며 加入願書 100枚

持参下京

2. 1967.9.6.下6時 海外出張関係로 上分來組한 本組 組織部長

김 新進支部, 事務長, 姜春吉과 同内容에 對해서 協談

姜春吉... 67.9.7 釜山 現地에 내려가서 支部 幹部와 協談

合意事項을 報告하기로함.

3. 67.9.7 組合員 查수責任者 鄭花榮으로 부터 事情에 依하여

9.9 總會 開催日을 無期延期한다는 電話報告 接受

4. 67.9.11 午前 10時頃

新進支部長 鄭政度, 副支部長 李演錫, 事務長 姜春吉

會社, 釜山工場, 總務課長, 上京來組以外 本組와 協談

* 協談中 11時30分頃 富平으로부터 (성명미상) 今日 下6時

總會로 開催하니 本組에서 注意해 달라는 要請과 責任者 鄭

花榮同志 行方不明이라는 電話報告接受

本組와 支部 合意事項

(1) 同一事業체임으로 新進釜山支部에 흡수한다.

(2) 今日 現地에 가서 總會는 延期하고 加入願書 接受로 흡수한다.

以上과 같이 合意하고 事務局長과 新進支部 叔喜團 富平現地

出張 (下午 2時)

* 下午 6時 協談과 同時에 從業員 約 230名 參加. 富平文化

禮式場에서 總會로 開催

敎事進行을 新進支部長 鄭致孝 同志가 進行하여 同一事業場의 二
 個 交渉團體 構成이 不可하다는 內容을 설명중 組合員의 反應은
 敎事進行을 中斷. 가칭 準備委員會에서 敎事를 進行
 全國金屬勞動組合 直轄 新進自動車分會를 結成

分會長 鄭 熙 烈.

副分會長 鄭 基 昱, 柳 基 錫

5. 69. 9. 12 下 2時

本組委員長, 新進支部長, 事務長, 富平分會敎書田과 合席, 本組
 事務室에서 協談

※ 敎談中 下午3時頃 富平으로 부터 電話報告接受

內容...分會長, 副分會長, 2名, 金鳳洙(組織), 金在明 計 5名
 을 解雇 通告하였다는 報告.

本組, 支部, 分會, 合意內容

會社側에서 보복행위를 하고 있으니 더 事態가 惡化될 우려가
 있으니 會社側에서 解雇를 철회하고 釜山, 支部에 高수 將것을
 合意.

但, 支部長이 會社側과 協談해서 오늘 合意事項을 決定한다.

6. 1967. 9. 13 新進支部長, 事務長, 富平工場到着, 會社側과 9. 12

本組, 支部, 分會 合意事項에 對한 協談

※ 會社側, 5名 解雇者, 철회를 할 수 있다하여 결의 9. 13. 下

7時 雪平現地に 支部. 分会 幹部協談.

支部長、会社側과 協談経緯 설명하고 결렬됨에 따라 支部로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宣言하여 分会로서는 本組와 協
談 交渉할 것을 宣言.

7. 67. 9. 14 分会幹部來組 分会設立 報達申請

本組...同一事業場에 2仁 交渉団体を 構成할 수 있다는 内容
을 再強調

分会側...支部에서도 관여 않겠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희생만
하고 말하는 것인가?

本組...新設支部長の 会社側과 協談事項에 대하여 報告를 提하
지 못하였으니 報告를 들은후 결정 작기로 同意

8. 67. 9. 15. 新設支部長으로 부터 (9.13) 協談事項報告 提하고

支部로서는 관여 않겠다는 재확인

本組에서는 分会장에서 지난 9.11 會談事項이 未精한 듯이 알
으니 9.20 恒味總會 召集을 指示(口頭)

9. 67. 9. 19. 分会長 錦昭烈로 부터 9.20 總會가 不可能하다
는 報告提

10. 67. 9. 20 秋田田 會合(添. 金列. 幸) 우선 直轄分会도 確
定할것을 合意(口頭合意)

※ 9.20 下. 6時 会社. 到工場長. 總務次長. 來組하여 本組. 委員長

金副委員長、事務局長과 協政

本組...此條件은 5名 解雇 許可할것을 主權

會社...重役과 協政하러 決定하기로 合意

11. 67. 9. 22 上 10時 委員長、金副委員長、會社、重役、面莊
協政

內容...金山工場支部에 移수하고 金山、新進支部大會를 召集하여
支部事務室을 富平으로 移轉하고 解雇者도 重役會에서
輪流 복직시킨다.

本組에서는 現地 組合員에 意見을 청취후 決定하기로
合意.

* 9. 22. 下 5時 委員長、金副委員長、總務部長、現地到着、組合員
約 40名 集會 會社와의 交渉 장위를 說明한바 組織을 살리
는 方法이라면 本組方針에 따르기로 하다

12. 1967. 9. 24. 新進金山支部 臨時大會閉會後 金炳龍、副委員長
長、參事、富平工場、장위說明
支部、事務室을 富平으로 移轉할것을 決定.

13. 67. 10. 2 新進自動車、支部、事務所、현장申告、事務所、所在
地、仁川市 葛川洞 145. 番

朝鮮企業社와 東洋機械勞使紛糾経緯

大邱市 七里洞 所在 朝鮮企業社와 市内 永登浦区 文東洞에 所在하고 있는 東洋機械에 從事하고 있는 勞働者들은 使用者들의 惡한 勞働支配와 勞組 構成 妨害의 行위로 말미암아 基本權의 團體權이 侵害되어 自由롭고 勞組活動이 保障되기 위하여 卽時, 勞使紛糾経緯는 다음과 같다.

1. 朝鮮企業社、勞使紛糾경위

(1) 68. 1. 20 韓國勞組 慶北道 協敎會 事務局長 金同鎔同志가 來組 大邱市 七里洞에 所在하고 있는 朝鮮企業社에 勸誘하고 있는 林某乙로 부터 勞働組合 結成을 要請한다는 要旨

事業體名 朝鮮企業株式會社

所在地 大邱市七里洞 203

代表者 社長 李 榮 熙

従業員數 約 600 名

(2) 68. 1. 25 本組 敎室部長 孫正植 同志를 現地に 迎ふ자 音장하여 従業員 林某乙 同志를 面接하여 加入願書用紙 400 枚, 外 勞組結成節次를 알선하고 2月 15 日頃 結成式을 하기로 合意

(3) 68. 2. 24 加入願書 約 400 枚 接受후 韓國金屬勞組 慶北支部 朝鮮企業社 分會 結成

分會長	林	義	乙	
副分會長	李	昌	基	林 炳 沢
總幹事	李	福	西	
假職 "	朴	仁	義	
教員 "	叔	茂	河	

以上과 같이 労働組合을 構成하고 支部에서 數次에 걸쳐 勞使
間 平和的인 交渉을 企圖하였으나 使用者의 故意적인
阻害로써 이루지 못하고 翌日 68.2.29자로 分會長 林義乙
副分會長 李昌基, 組織部長 朴仁義, 總務部長 李福西를 不當解雇조
치를 取하되로서 3月5日 慶北道地方労働委員会 救済申請提起하고
支部、幹部와 分會 幹部와 論議한바 結論으로 使用者의 단합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므로 労働平政를 提議하기로 合意.

- (4) 68.3.6 下 6時 30分頃 運動場을 期해 朝鮮企業社, 正門에
다 大群衆-스 2台를 待期시키고 運動하는 組合員을 使來시키고
자 하였으나 使用者側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正門 및 各職場의
門을 닫고 警備員이 一步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運動者를 殘
酷을 命함) 一時 苦痛하였으나 大邱市力 各産別 支部, 幹部들이
응원차 나와 있다가 너무나 不當하게 使用者의 단합이 심하므로
 격분하여 正門을 열고 들어가서 (社長 不在) 常務라는 者와 面
談되 組合員을 不法 監禁하지 말고 運動 시킬것을 要求하여 約
300名 가까운 組合員을 버스에 使來시켜 大邱市 労働會館에

~64~

4. 다음과 같이 華教 次數한다.

(1) 日時 1968年3月6日

(2) 場所 大邱市 勞動會館

(3) 出席人員 292名

(4) 要求事項

가. 賃金引上 50%

나. 不當解雇追討

다. 不當勞動行爲中止

投票結果 292名中 可292票

(5) 68.3.9. 慶北道地方勞動委員會 華教稅申告

(6) 68.3.12 勞動委員會로 부터 捕法判定 (상각기 단로원, 4.1)

(7) 華教行爲不可投票

① 日時 1968.4.3. 下 6時30分~7時

② 場所 華教企業社 正門前 200人

③ 投票參加 男257名, 女43名 計 400

④ 投票結果 可366票, 否24, 無? 計 390

⑤ 投票時間 68.4.3 下 7時10分~7時30分

⑥ 投票場所 白雲寺組, 慶北支部 聯合會館 1부실

⑦ 投票 以 南票立會人

華教企業社 投票保證 金 在 味

勞總、廣北道協政 事務局長 金 昌 鎭

東大邱 警察署 情報係 金 在 鉉 捕 東 鉉

以上과 같이 報告하여 本組 規約第19條에 依從 4. 4. 爭執
行爲承認

(8) 68. 4. 9 爭執行爲등인, 組合員들의 一致團結과 韓國勞動廣北
道協政會 후원과 各關係機關의 協助로 68. 4. 11 자로 雙方
協定으로 성공리에 끝났다. (協定서, 정의관계 添添)

2. 東洋機械勞動組合總連 (永登浦)

- (1) 事業場名 東洋機械工業株式會社 (永登浦)
- (2) 所在地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文萊洞 6가 43
- (3) 代表者 社 長 韓 昌 根
- (4) 従業員數 約 430名
- (5) 事業種目 自動車附屬品製造

1. 自體 班長級이 會合 다음과 같이 勤勞條件 改善을 要求

가. 賃金引上 50%

나. 日曜公休手當 및 夜間手當 支給要求

다. 賞與金 支給要求

68. 3. 20 會社에서 賃金引上을 約 8%程度으로 決定한바 勞
働者側에서는 不當성을 지적 3月 25日까지 再調整이 있을지
어떠한 답답도 不사한다고 宣言

2. 68. 3. 26 全社에서는 全従業員을 希望에 集結시켜
従業員들의 要求條件을 더 받아 드릴수 없으며 대우가 나
쁘면 全社를 辭職하라는 辭職願 양식을 全員에게 配付하여
其中 45 名이 辭職願을 提出

永登浦地域 支部、組織部長 金正哲 同志가 情報를 입수 한
지애 出發하여 従業員 約 160 名을 永登浦 労働會館에 集
合시켜 労働組合 分會를 結成 分會長 李 柄 泉 同志를任

3. 68. 3. 27 使用者는 此際에 組合分會를 철거하 파괴할
目的으로 全社 運送船과 他業種으로 대체한다는 理由로 全
従業員을 解雇予告과 同時職場市鎮을 斷行 500 餘 勤勞者
들은 一朝에 失職彷徨케 하는 常職以下の 進行을 忍行하여
勤勞者들은 使用者 임의대로 一方的인 職場퇴조에 對한 無
당심을 저지 우리의 職場을 死守하기 爲하여 46 畝의 농
성무장을 結束하고 使用者는 米價、組織 파괴뿐 아니라 法外
有給休日を 無視하고 違法賃手當을 支給하여 주지않고 庫小
를 强하고 있어 本組合 및 當해 支部에서는 勞使衝突을
期하기 爲하여 勞組를 報告하고 平和的인 漸進變遷을 하자
고 主張에 對해 使用者側에 尊重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
韓國勞總을 위시해서 地域勞組會 및 國無官方、各企業機關의
적극적인 援助와 組合員一致團結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主張이
관철되었다.

調查關係

賃金引上活動結果表

支部・分会名	組合員数	4月 賃金	引上額 %	引上額 %	活動状況
韓国機械支部	960	10,262	30	20	労使交渉
重工業 "	1,052	10,950	42	30	"
新造工業 "	820	8,440	40	20	"
起重産業分会	1,160	7,920	40	25	"
金屋社 支部	3,620	5,720	50	25	"
三和建設分会	160	10,404	30	15	"
大韓電機 "	450	6,996	50	21	争 執
利川電機 "	430	9,970	40	23	労使交渉
韓国제외리 支部	530	5,180	50	33	争 執
韓国工業分会	201	7,670	30	18	労使交渉
日新産業 "	190	1,380	40	30	"
韓国特殊工業 "	180	7,060	100	30	争 執
第一カーシ分会	62	5,090	50	25	労使交渉
韓国銅業 "	230	7,520	35	20	"
韓永産業 "	45	6,230	35	20	争 執
大韓重機 "	210	7,360	30	20	労使交渉
동양 권선회 "	320	4,090	40	25	"

支部及分台名	組合員数	4月償还	要求額 %	引上額 %	活動状況
和陽連業分会	60	5,730	50	25	滞横交渉
新北企業 "	80	5,460	50	25	"
朝陽機械 "	29	6,900	50	50	"
国光機械	32	5,200	70	20	"
삼영 "	25	6,450	50	30	"
진일가래 "	282	8,640	50	40	"
日隆機械	450	2,420	40	20	"
韓國電力機械	65	9,210	30	20	"
三井電機	79	6,420	30	15	"
韓國通修機械	320	6,120	30	20	"
朝鮮企業 "	500	-	50	30	滞 収

婦女組合員學年調査

1968.1.7調査

小 卒	中 卒	高 卒	大 卒	大学院	其 他	計
131	(正科卒業生) 613	52	×	×	×	1,056

婦女組合員年令調査表

年 齢 高	13~16	16~18	18~20	21~30	31~40	計
	13	136	212	563	12	1,056

婦女組合員勤続年数調査表

3年未満	3~5	6~8	8~10	10~15	15~20	計
938	209	9	×	×	×	1,056

婦女組合員學年調査表

68.1.7調査

小 卒	中 卒	高 卒	大 卒	大学院	其 他	計
15	29	16	×	×	×	60

婦女組合員年令調査

18~20	21~30	31~40	41~50	51~60	61~70	計	備 考
24	36					60	

婦女組合員勤續年數調查

3年未満	3~5	6~8	8~10	10~15	計
59	1				60

婦女組合員既婚未婚調査

未婚	既婚	未亡人	其他	計	備考
59	1			60	

組合員月賃金男女對比調査

事業体名	最高賃金		最低賃金		時間当労働額		平均賃金
	男	女	男	女	男	女	
金澤社会福祉会	21,000	13,200	6,400	5,500	80	45	7,885

組合員週間労働時間男女對比表

事業体名	基本労働		時間外労働		合 計		備 考
	男	女	男	女	男	女	
金澤社会福祉会	48	48	12	6	60	54	

※ 金澤社会福祉会が、本調査の第一位として報告された。

조합원급여상황

(連一機械)

급여 (1인당 일평균)

68.3.31 현재

구분 직종	기본급	제수당	합 계	해당인원	총 액	비 고
사무직	230	90	320	42	6,400	
숙련공	280	80	360	105	87,500	
미숙련공	180	40	220	130	28,600	
중노동	250	30	280	15	4,500	
청노동	200	30	230	12	2,160	
평균합계				282	80,060	

* 전월기준 (정남) 대상을 조사한것임.

재해발생상황

67.4~68.3

구 분	총 수	사 망	질 병	공 상	사 망	비 고
전 수	120		1	119		

재해보상금 지급상황

67.4~68.3

구 분	금 액	전 수	비 고
총 액	396,000	159	
장.사.비			
유족보상			
요양보상	247,500	120	
후양보상	15,300	35	
장해보상	43,200	2	
원 시보상			
잔존금지대	27,000	2	

5人家族生計費調査

月 20,000 圓 4 日

費 目	比 率	内 容		
		品 名	数 量	価 格
		白 米	50 ㄹ	2,250
		잡 곡	10 ㄹ	400
		밀 가 루	1.8 KG	90
		고 기 류	1.8 KG	250
		생 선 류		900
		계 란	20 ㄹ	220
		두 부 류		200
		우 유 류		300
		밀 처 류	1.2 KG	200
		해 조 류		100
		녹황색채소류		600
		항 색채 소 류		600
		기 른 개	한기류 밀치류	350
		소 금 기 타		90
		고 추 심 랑		290
		과 심 기 호 품		160
仕 居 費	2.75 % 550	간단한 수건과 가구집		

費 目	比 率	內 容		
		品 目	數 量	価 格
광 열 비	9.25%	연		1,500
	18.50	권 기 료		350
운 영 비	2.5%	수 도 료		50
	500	오 물 제 거		40
의 료 비		1년에 주인		7,290
	11%	" 주부		6,000
	2,200	" 장남		3,415
		" 차남		2,925
		장녀		2,415
교 육 비	2.5%	공납금, 책: 학용품		
	500	장부금		500
문 화 비	5%	신문 1종, 잡지 1종		1,000
	1000	영화, 승방정대		
교 통 비	7.5%	종근왕복		1,500
	1,500	주부시장등, 외출		
보 건 위 생 비	10%	목욕, 이빨치누		2,000
	2,000	의약품비		
세 금 공 공 요 금	2%	재산세, 야경비세		100
	400	1년합계를 12등분한것		

서울支部收拾指導

서울支部 67.9.8大會 決選무효에 대한 指導

서보자 1452-1486호 (68. 2. 13)로 본組 傘下 서울支部의 67.9.8 第6次 定期代議員大會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 合法的인 大會라고 認定될 수 없어 본組 委員長에게 收拾大會를 의뢰 하였음.

1. 代議員大會 決選 무효 理由

支部 代議員大會는 分會組合員의 직접 無記名 투표에 依拠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되고 在籍代議員 과 반수의 出席으로 決選能力이 부여되는 것인 바 67.9.8 召集된 서울支部 第6次 定期代議員大會는 在籍代議員 25名中 20名이 參席하였다고 하나 參席代議員에 對한 서울市の 調査結果 無資格 代議員이 9名이 參與하였으므로 본代議員大會는 在籍代議員 過半數 未達로 모-든 決選은 무효임.

가. 無資格 代議員

(1) 京城蟬物分會 2名(지부과전 대의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음)

(2) 동양전전지 분회 2名(")

(3) 태양금속분회 3명(대의원을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였음)

(4) 東亞金屬分會 2名(대의원을 직접 조합원이 무기명 투표에

~80~

의하여 선출하지 않음)

2. 任員の 任期大会인 67年度 第6次 定期大役員大会가 무효됨
에 따라 支部代議員大会의 召集权者는 前任支部長 李奎聖이 되
어야 하나 上記 李奎聖의 在職 事業場인 奉信鑄物價金대장
과 奉信鑄物分会 組會員名簿를 調査한 結果 組會員 자격
이 없으므로 本支部 組合幹員들에게 支部代議員大会召集을
의뢰하는 것임

3. 異議書提出

全金서支 第394号(68. 2. 16)로 異議書를 本組合에 提
示.

內容: 67. 7. 8 第6次 定期代議員大会 参席代議員中 9
名이 무자격자라 하나 支部에서 調査結果 6名으
로 판명되었으며

支部長 李奎聖 組會員자격이 없다는데 對해서는 奉信鑄
物代表의 在職確認書와 當해 分會長의 分會所屬 組
會員確認書를 첨부하여 提出

4. 臨時大会召集公告

서支 第398号(68. 2. 12)로 第5次臨時代議員大会 召集公
告接渡

(1) 日 時: 1968年 2月 21日 下 6時

(2) 場 所: 市内西大門區 巡檢署 198 支部事務所

③ 目的: 1967年度 定期代表員大会 決散事項中 모든

결의에 관한 것

5. 臨時大會 召集延期指示

全會第126号(68.2.20)로 本組는 什保社 1452-1486 및 什保第394号를 檢討 後 調査하여 最終方 針수령 指示 있을 때까지 大會 및 其他 全會召集은 연기 또는 보류하라는 指示

第5次臨時大會는 2月27日로 延期指示

6. 本組 調査團 構成

1968. 2. 22 第3次 中央執行委員會에서 調査團을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調査團長	事務部長	沃 濤 碩
調査委員	調査部長	趙 玉 行
"	教宣部長	孫 正 植
"	法規部長	卍 始 鉉
"	國際部長	李 沃 重

調査期間 1968. 2. 23 ~ 26

조사범위 什保社 1452 및 什支部第394号

7. 第5次臨時大會 延期公告

什支部第400号(68.2.22)로 支部臨時大會 延期公告

延期日차 1968年 2月 27日 下 6時

8. 調査団 調査結果

(1) 68. 9. 8 定期代議員大会에 於하여

68. 9. 8 第6次 定期代議員大会는 在籍代議員 25名
中 20名 参席으로 大会가 成立되었으나 代議員 9名
이 参席者(직접組合員이 送出하지 않음) 参席으로 第6
次 定期大会는 무효로 認定

(2) 서울支部長(李奎堃) 組合員 자격문제에 關하여

서울支部長(李奎堃) 組合員 자격문제는 別添 確認書와 같
이 組合員資格을 認定

(3) 第5次臨時大会召集公告에 於하여

68. 2. 12日 서울支部長 李奎堃 名의로 第5次臨時代
議員大会(68. 2. 27) 召集公告는 有効하며 傘下 分会
總會(代議員大会)에서 送出된 支部파견대위원은 法과 規約
에 위배되는 事項이 無으므로 合法으로 認定함.

1968. 2. 26

調査団	事務局長	沃	淳	模	印
	調査部長	趙	王	行	印
	敎育部長	孫	正	植	印



確 認 書

要 査 要

西紀 1924年 3月 23日主

위촉은 本會社에 西紀 1965年 4月 부터 入札하여 今일에 至
하기 까지 在職中인 者로서 當該者의 勞動組合任務로 因하여
休職期間中 當社는 法人企業體로서 賃金支拂이 不可하여 賃
金台帳에 記載하지 않았던 것이며 西紀 1968年 1月 1日
부터 當社는 自然人에서 法人體로 변경됨에 따라 諸般具備
에 資力을 期하기 爲해서 支拂長 李奎愛에게나 賃金 支
拂할 것을 確約함

1968年 2月 23日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裕洞 11番地

株式會社 奉信鋸作所

代表理事 金 奉 要

9. 第5次臨時大會開催

1968年2月27日 支部事務室에서 本組委員長 및 部長 等出席하에 代表員 22名 出席으로 67.9.8 定期大會 결의사항중 보강결의를 하다.

支部長	李	奎	雲
副支部長	朴	應	孝
"	張	二	葵
事務長	李	武	山

10. 收拾 結果 報告

서보사 1452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수습 지도 결과
를 서울시에 提出하다.

團體協約關係

支部別団体協約締結現況

67.3.31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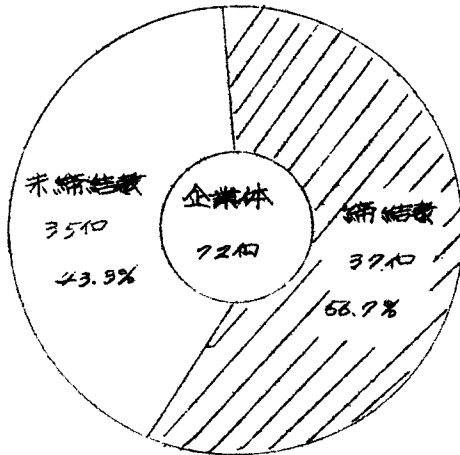
支部名	区分	企業 体数	組合員数	締結状況		未締結状況		備考
				締結数	該当組合員	未締結数	組合員数	
永登浦支部		21	2954	13	2,683	8	271	
八尾	"	9	1329	2	307	7	1022	
京畿	"	6	757	4	651	2	106	
重工業	"	1	1054	1	1054			
金星社	"	1	3465			1	3,465	露敵中
新進工業	"	1	695	1	695			
韓国機械	"	1	756	1	756			
三洋電機	"	1	518			1	518	休業
釜山	"	5	1032	3	763	2	269	
慶南	"	2	230	2	230			
慶業	"	3	469	1	400	2	69	
全南	"	6	132	4	86	2	46	
三陟	"	1	160	1	160			
安城	"	1	118			1	118	
春川	"	2	109			2	109	
水浦	"	4	169	2	80	2	89	
忠南	"	2	146	1	45	1	101	
韓国배야령		1	575	1	575			
靑島鉄工分会		4	223			4	223	
計		72	14,864	37	8,425	35	6,439	

团体協約締結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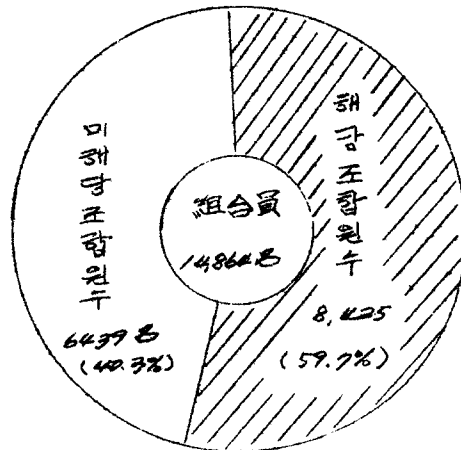
68.3.31 現在

対 象		締 結 状 況				未 締 結 状 況			
企業体	組合員	企業体	組合員	目 的		企業体	組合員	目 的	
				企業体	組 合			企業体	組 合
72	14,864	37	8,425	56.7%	59.7	35	6,439	43.3	40.3

締結企業体対比表



該当組合員対比表



傘下企業体與団体協約締結現況

順 位	事 業 場 名	支 部 長 及 办 公 長
1	株式会社 金星社	崔 鍾 玉
2	仁川重工業株式会社	朴 允 興
3	韓國機械工業 "	朴 世 天
4	新進自動車工業 "	鄭 致 度
5	三洋電機工業 "	金 炯 錫
6	起重産業 "	金 炳 龍
7	大韓電線 "	趙 王 行
8	東洋起重製造 "	尹 相 勳
9	大韓重機工業 "	金 正 培
10	東洋鋼鐵工業 "	姜 秉 一
11	三英機械製作所	金 信 重
12	起馬産業株式会社	文 道 植
13	李承勳鐵工所	李 昌 石
14	國際豆科工業株式会社	趙 仁 衡
15	信光企業 "	李 昌 烈
16	韓國特殊工具株式会社	李 亨 鳳
17	東洋工業 "	崔 容 河
18	馨永産業 "	朴 彰 若
19	日信産業 "	

1968. 9. 31 現在 -91-

所	在	地	組合員数	団体協約締結 年 月 日	所屬支部名
金山市	東萊区	温泉洞 707	3465		事業場支部
仁川市	松岷洞	1	1054	66. 4. 13	"
"	万石洞	6	258	63. 12. 25	"
金山市	釜山鎮区	田甫洞 83	695	65. 4. 30	"
서울	永登浦区	文萊洞	578		并, 甘
"	"	始興洞 574	1192	63. 2. 1	永登浦支部
"	"	香山洞	380	63. 12. 15	"
"	"	文萊洞	230	63. 11. 6	"
"	"	新道林洞 446	208	62. 4. 25	"
"	"	楊平洞 1街 15	105		"
"	"	堂山二洞 126	52	63. 8. 16	"
"	"	楊平洞	49	63. 7. 15	"
"	"	九老洞 600	12		"
"	"	堂山洞 5街	45		"
"	"	楊平洞 2街 37	92		"
"	"	" 271	160	66. 7. 9	"
"	"	文萊洞 4街 42	14	64. 4. 8	"
"	"	永登浦洞 4街	36	63. 9. 7	"
"	"	楊平洞	93		"

順 位	事 業 場 名	支 部 長 又 分 會 長
20	第一미싱 株式会社	李 義 松
21	柳城機械 "	
22	韓國電力機械 "	咸 鎮 甲
23	대한제쇠 "	李 元 載
24	三和鑄鉄 "	洪 鴻 明
25	京城鑄物 製作所	劉 貞 佑
26	公打字機 株式会社	張 二 漢
27	東洋건전지 "	尹 成 煥
28	東亞金屬 "	趙 鎔 範
29	東洋精密工業 "	朴 應 導
30	華信鑄物 製作所	召 烈 圭
31	韓國通信機械株式会社	崔 亨 導
32	太陽機械 "	趙 東 郁
33	韓國工業 "	李 英 珠
34	利川隆機工業 "	文 益 模
35	韓國메아리 "	姜 俊 錫
36	韓國鋼索 "	尹 範 重
37	雷平卷鋼 "	李 學 善
38	京城工作 "	尹 基 若

所 在 地	組合員数	団体協約締結 年 月 日	所属支部名
什魯 永登浦区 文策洞	62	66. 7. 19	永登浦区
" " 梧栖洞 163	120	62. 9. 1	"
" " " 158	76	62. 4. 20	"
" " 楊平洞	35		"
江原道三陟郡业坪區新義里 33	160	67. 10. 12	三陟支部
什魯 蘆山区 文培洞 11	10		什魯支部
什魯 鍾路区 清達洞 54	60	64. 6. 21	"
" 城東区 上柱十里洞 12	247	63. 11. 20	"
" 西大内区 弘濟洞 301	53		"
" 城東区 松丁洞	365		"
" 蘆山区 文培洞	97		"
" " 元曉洞	298		"
" 鍾路区	212		"
仁川市 野井洞 419	95	69. 11. 2	東鐵支部
" 花水洞 5	300	63. 11. 21	"
" 山谷洞 125	515	62. 9. 27	東萊場支部
" 松岷洞 1	202	67. 7. 26	東鐵支部
" 清川洞 2144	54	63. 8. 16	"
" 清川洞	58		"

順 位	事 業 場 名	支 部 長 分 會 長
39	国光棧工社	徐 炳 文
40	韓興 "	金 天 奎
41	光茂 "	張 煥
42	大洋自動車 株式会社	安 亨 珠
43	朝鮮鉄工所	朴 興 錫
44	三南 "	李 永 春
45	日進棧械 株式会社	朴 周 漢
46	培雪工業 "	鄭 宗 址
47	新世金屬工業社	金 武 珍
48	進一棧械工業株式会社	朴 元 培
49	中央棧械 "	田 乙 守
50	兄弟工業 "	金 日
51	東洋棧械 "	李 柄 泉
52	通盛△廻△△ "	呂 一 才
53	金星社 安養工場	呂 明 九
54	達亞産業株式会社	宋 斗 吉
55	豐星電機工業株式会社	李 在 禧
56	大韓製罐 株式会社	李 完 世
57	朝鮮企業 "	林 泰 乙

所 在 地	組合員數	団体協約締結 年 月 日	所属支部名
金南光州市 大仁洞 177	28	62. 9. 27	金南支部
" " 黄金洞 134	10	62. 9. 27	"
" " 大仁洞	19	62. 9. 18	"
" " "	27	62. 8. 27	"
大邱市 太平路 2街 3	76		康业支部
" 大新洞 1街	52		"
釜山市 東萊区 釜谷洞	312		釜山支部
" " 長石洞	323		"
" 影島区 蓬萊洞 4街	128		"
馬山市 月影洞 9	213	63. 10. 1	慶南支部
" 新浦洞	17	64. 5. 10	"
京畿道 安城邑 錦山洞 50	118		安城支部
서울市 永登浦区 文萊洞 6가 42	230		영등포지부
" " 始興洞	115		-
京畿道 安養邑 斗池洞 555	191		金園社 "
서울市 永登浦区 文萊洞 6가 7	102	68. 1. 1	永登浦 "
" 城東区 聖水洞 1가 656	60		서울 "
仁川市 南區 桃花洞 603	12		京기 "
大邱市 七聖洞	460	68. 4. 11	康业 "

順位	事業場名	支部長受分金
58	韓国理研 株式会社	李 根 秀
59	新興工業社	河 永 奉
60	東洋内燃機 "	崔 東 華
61	三鈴機工社	朴 勝 順
62	三文鉄工所	李 晟 雨
63	三星 "	金 銀 翔
64	中央 "	
65	東亜 "	
66	東海 "	
67	경희 "	
68	반도 "	
69	大洋 "	
70	일광 "	
71	명남 "	
72	금강 "	

所 在 地	組合員数	団体協約締結 年 月 日	所属支組名
大邱市 三省洞 150	146		西南支部
清州道 清州市 檀入洞 937	109		清州 "
大安市 大成洞 11	46	57. 11. 6	西南 "
木浦市	30		木浦 "
"	18	67. 12. 5	"
"	62	" " "	"
釜山市 鳴丘子 南榮洞 121	25		鳴丘巷子支部
" " 大平洞 221	25		"
" " "	14		"
" " "	32		"
" " "	18		"
" " "	15		"
" " "	17		"
" " "	17		"
" " "	16		"

노사협의회설치현황

支 部 및 分 会 名	설치일자	千 성		비 고
		노 조	회 사	
金星社 支部	63. 7. 9	4	4	奇萊場支部
靜岡枝機 "	63. 6. 24	4	4	"
重工業 "	63. 9. 27	4	4	"
新進工業 "	64. 9. 20	3	3	"
韓再배어링 "	63. 4. 11	3	3	"
三洋電機 "	61. 2. 14	3	3	休業 61. 12. 20
起重産業分會	63. 11. 15	4	4	永登浦支部
大韓電線 "	63. 6. 23	3	3	"
大韓重機 "	61. 10. 31	"	"	"
三共産業 "	61. 10. 28	"	"	"
東洋鋼鐵 "	61. 10. 29	"	"	"
新光企業 "	62. 9. 15	"	"	"
廣永産業 "	62. 4. 5	"	"	"
日新産業 "	63. 9. 18	"	"	"
第一汽-油 "	66. 7. 9	"	"	"
韓國特殊工兵,	65. 8. 26	"	"	"
國際오리쓰 "	64. 4. 18	"	"	"
韓國電力機械"	62. 10. 20	"	"	"

支部 및 分会 名	설치일자	구 성		비 고
		노 조	회 자	
進亞産業 分会	68. 1. 12	3	3	永登浦支部
東洋아-싱 分会	62. 9. 15	4	4	"
柳城企業 "	63. 10. 2	3	3	"
利川電機 "	62. 6. 24	"	"	京畿支部
韓國銅業 "	62. 9. 16	"	"	"
韓國工業 "	64. 9. 12	"	"	"
京城工業 "	65. 2. 6	"	"	"
富平製鋼 "	64. 3. 2	"	"	"
公打字機 "	63. 8. 23	"	"	서울支部
東洋장원 "	66. 2. 9	"	"	"
豐寧製機 "	68. 2. 5	"	"	"
韓國通信機 "	67. 12. 11	"	"	"
太陽金屬 "	67. 10. 6	"	"	"
進一機機 "	62. 3. 21	"	"	慶南支部
日進機機 "	65. 3. 18	"	"	釜山支部
培昌工業 "	65. 9. 23	"	"	"
동양전기기 "	63. 7. 16	"	"	서울支部
三和製鐵 "	62. 2. 26	"	"	三防 "
東洋內燃機 "	67. 4. 14	"	"	忠南 "

支部 및 分会 名	설치일자	千 성		비 고
		工 正	회 사	
国光机械士社 分会	62.9.27	2	2	全南支部
朝鲜机械分会	63.7.21	2	2	"
龙溪産業 "	65.3.4	3	3	永登浦支部
嘉島鐵工 "	67.12.17	"	"	嘉島鐵工分会
三南 " "	64.5.3	"	"	慶业支部
朝鮮 " "	65.6.13	"	"	"
永浦特殊支部	67.6.25	4	4	永浦支部
嘉島理研分会	68.3.14	3	3	永南支部
朝鮮企業 "	68.4.11	3	3	慶业支部

改正版 發刊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勞勤團體에서는 團體協約의 重要性에 비추어 이의 全面締結과 質的向上을 目標로 繼續的인 活動을 展開해 왔다. 多幸히 使用者側에서도 이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우리와 協同함으로서 이미 相當한 協約締結率의 增加를 보았으며 그 內容에 있어서도 '유니온 섀' 制度와 唯一交渉對象의 採擇 賃金 其他勤勞條件의 顯著的한 改善等 많은 向上을 보여주고 있음은 勞使安定과 産業發展을 위하여 莫은 數難的인 成果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成果가 各級勞勤團體의 發勤한 組織力과 活기찬 活動의 結晶이었음은 다시 말할 餘地도 없는 것이지만 이 基準案도 전지량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 基準案을 制定한以後 여러가지 情勢變動에 따르는 不合理한 條項이 나타남으로써 이案의 全面的인 再檢討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에 一部 不合理하고 非現實的인 條項에 修正을 加하여 本改正版을 내면서 未締結分野의 完全締結과 아울러 既存協約의 質的向上에 參考가 될것을 衷心으로 期待해 마지않는 바이다.

1968年 4月 日

勞 總 本 部

이 冊子를 내면서

団体協約은 近代労働關係의 特色인 集團的이며 對等한 勞使交渉의 産物이며 同時に 勤勞者가 보다 나은 勤勞條件을 平和的으로 確保하는 代表的인 手段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協約의 内容도 漸次 廣汎해가는 傾向이 있는바 要는 어떠한 内容의 協約을 締結하느냐의 問題는 結局 労働組合의 規模와 實力如何에 달려있다고 할것이다. 왜냐하면 協約의 履行과 其效力을 担保하는것은 바로 組織力이기 때문이다.

勞總에서는 各級労働団体로 하여금 보다 나은 団体協約을 爭取하는데 多少나마 도움이 되게하고자 今年三月부터 設定된 「団体協約締結促進期間」에 앞서 本基業系를 内동을것을 構想하고 그동안 數次에 걸친 事務局長會議에서 草案의 檢討進捗을 거듭해오던바 지난 4月 21日 勞總常務會議에서 비로소 基業系으로서 確定되기에 이르렀다 同志들의 너그러운 諒解있기를 빌며 아울러 이冊이 合理的인 協約을 締結하는데 一助가 된다면 莫大의 幸이 될가 한다.

1963年 4月 日

勞總本部

案内의 말씀

1. 本基準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例示에 本通한것이며 이것이 對的인 것이라는 意味는 아니다.
2. 協約으로서 採擇할만한 條項은 可及的 廣汎하게 網羅하고자 하였다.
3. 各條文에 例示한 勤勞條件은 될수있는데로 法定基準이나 現行 通常基準보다 優越하도록 留意하였다.
4. 實際協約案作成에 있어서는 各組合의 實情에 맞도록 各條項을 取捨選拔하는 한편 그 基準에 있어서도 適當히 調節引用하기 바란다.
5. 解釈上 曖昧하거나 特別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條項에는 註釈을 부쳤다.

~104~

차 례

前文

第 1 章	總 則 (一條 ~ 4條)
第 2 章	組合活動 (5 ~ 13條)
第 3 章	人 事 (14 ~ 31條)
第 4 章	勞動時間 及 休日 休暇 (32 ~ 50條)
第 5 章	賃金 一時金 及 退職金 (51 ~ 56條)
第 6 章	安全 及 保健 (57 ~ 61條)
第 7 章	福祉 厚生 及 職業訓練其他教育 (62 ~ 68條)
第 8 章	災害補償 (69 ~ 76條)
第 9 章	団体交渉 (77 ~ 81條)
第 10 章	勞使協議制度 (87條)
第 11 章	爭執協定 (83 ~ 88條)
第 12 章	協約의 期間 及 効力 (89 ~ 90條)
附 則	(91條)

團體協約基準案

(前文)

□□株式會社(以下會社라한다)와 ○○勞動組合(以下組合이라한다)은 勞動法의 精神에 立脚하여 相互理解와 信義誠實의 原則 밑에 經營權과 勞動權을 尊重하여 勤勞條件의 向上과 勞使關係의 安定을 圖謀함으로서 産業의 發展과 組合員의 福祉增進을 具體化 目的으로 本協約을 締結한다.

(註)「□□株式會社와 ○○勞動組合은 다음과 같이 團體協約을 締結하고 相互誠實히 이를 遵守할것을 確約한다」 程度로해도 要件은 갖추었다표할것이다.

~106~

第1章 總 則

第1條 (唯一交渉団体約款) 会社는 組合을 從業員을 代表하는
唯一한 交渉団体로 認定한다.

(註) 唯一交渉 約款은 組合의 分裂을 防止하고 組
織力を 強化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條項은
반드시 設定할 必要가 있다.

第2條 (유니온 산制度) ① 会社의 從業員은 第3條에 規定한
者를 除外하고는 雇傭契約日로부터 一〇日이 經過하면
 모두組合員이 된다. 但 組合에 加入을 拒否하는 從業員
은 即時이를 解雇하여야 한다.

② 臨時工 또는 養成工의 境遇에 있어서는 90日이 經
過하는 날로부터 組合員이 된다.

③ 会社는 組合員이 組合으로 부터 除名되었을 境遇에
는 40日以内に 이를解雇하여야 한다.

(註) ① 이와 같은 完全유니온 산制度는 組織強化 上 總
체로 必要한 것인바 改正労働組合法第39條는 이
制度를 明文으로 許容하고 있다.

② 解雇期日을 40日로 한것은 勤勞基準法第27
條의 2의規定에 依한 予告解雇의 境遇를 勘案한
것이다

第〇〇條 (클로즈등 差別) 会社는 組合의 組合員만을 雇傭한다.

(註) 「会社는 組合을 通하여 勞動力을 供給한다」 條의 規定을 抽入하고자 할 때에는 職業安定法第17條의 勤勞者供給事業에 關한 勞動庁長의 許可가 必要하다.

第〇〇條 (메인テナンス 差=組合員維持制 maintenance of membership) ① 本契約締結當時 組合員이 었던者는 本契約의 有効期間中 組合員이 義務를 진다. 但 協約期間中 新規로 採用된者는 採用과 同時에 組合員이 되어 同一한 義務를 진다.

② 前項의 組合員이 協約期間中 組合으로부터 除名되었을 時는 会社는 40 日以内に 이를 解雇하여야 한다.

(註) 任意脫退者을 防止 하고 組織力을 維持하기爲한 "差制度"

第3條 (非組合員의範圍) 組合은 在의 各종의 一에 該當하는 者를 組合員으로 加入시키지 아니 한다.

1. 部長 部次長 工場長 營業所長 出張所長 및 이에 相當한 職에 있는者

2. 課長 課長代理 및 이에 相當하는者 其他人事에 關하여 直接的인 權限이 있는者

(註) 勞組法第5條에 規定한 者는 當然히 排除하여야

할것이나 이는 當然한 豫念에 不過하므로 組合의

自主性を 살리기 위하여 各々 實情에 맞는 職務 또는 職務를 具體적으로 明瞭화 必要가 있다.

第 4 條 (協約의 優先) 이協約은 就業規則其他會社가 定한 諸規則 또는 會社와 組合或은 會社와 従業員同에 있어서의 모든協定 또는 契約에 優先한다.

(註) 勤勞基準法第 97 條 및 勞動組合法第 36 條에 明示

된바와 같다 그러나 會社가 特定人에 對하여 協約 基準以上の 處遇를 함으로써 組合의 統制를 紊亂케 할 虞가 있기 때문에 特別規定할 必要가 있다.

第二章 組合活動

第 5 條 (組合活動의 保障) 會社는 組合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며 正當한 組合活動을 理由로 不利益한 取扱을 하지 아니한다.

第 6 條 (勤務時間中의 組合活動) 組合員이 勤務時間中에 組合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은 事前에 會社에 口頭로서 通告한다.

(註) 通告事項을 具體적으로 列挙하여도 無妨하나 이것 이 지나치면 會社가 組合活動에 干涉하는 結果가 되며 이는 勞組法第 10 條의 不當勞動行爲가 되기 때문이다.

第 7 條 (組合活動의 取扱) 組合員이 組合活動을 爲해 就業하지 못한 日數 또는 時間에 對하여는 會社는 이를勤務

한것으로 取扱한다

第 8 條 (組合專任者) 組合은 組合員中에서 〇〇名の 組合業務
專任從事者를 둘수있다 但 이境遇 組合은 그 姓名을
會社에 通告한다.

第 9 條 (組合專任者의 取扱) 組合專任者의 處遇는 다음에 依
한다

1. 專任期間中の 賃金은 會社가 負擔한다.
2. 身分其他處遇一切는 一般從業員과 同一하게 取扱한다
3. 專任解除와 同時에 會社는 即時原職에 復職시킨다.
4. 專任期間終了後의 有給休暇 및 退職金等의 算定은
組合의 出勤日數 및 在任年數를 通算決定한다.
5. 會社는 組合의 專任者였다는것을 理由로 如何한 不
利益한 取扱도할수 없다.

第 10 條 (組合費徵收方法) 會社는 組合員의 給料支拂에 있어서
組合으로부터 通知한 組合費를 一括控除하여 〇日以内に
이를組合에 引渡하여야한다

第 11 條 (他團體의 任員就任) 〇會社는 組合員이 組合이 加盟한
上級團體 및 組合이 認定하는 勞動運動에 關係있는 団
體의 專任任員으로 就任함을 認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組合員의 處遇는第9條를 準用한다.

第 12 條 (會社施設의 利用) 組合은 會社가 設한 組合事務所를

~110~

設置할 수 있으며 《組合活動上必要한 土地 建物 什器 備品
通信 其他會社施設을 會社와 協談하여 利用할 수 있다.

第 13 條 (揭示) 印刷物貼付配付의 自由) 組合은 會社構内に
있어서 揭示或은 印刷物의 貼付 및 配付를 自由로 行
할 수 있다.

第 3 章 人 事

第 14 條 (人事權의 原則) 組合은 從業員의 採用, 解雇, 異動,
休職 昇進 降格 賞罰其他의 人事權이 原則적으로 會社
에 있음을 認定한다.

但 會社は 人事의 公正을 期하는 同時에 組合員임을
理由로 不利益한 取扱을 할 수 있다.

第 15 條 (組合任員의 人事) ① 會社は 組合의 任員 및 專任職
員에 대한 人事에 關하여는 一切 組合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前項의 任員 主는 專任職員은 다음 範圍內的 者로
한다.

1 組合의 任員 및 專任職員

2 組合支部 또는 分會의 任員 및 專任職員

3 第 11 條의 專任任員

第 16 條 (賞罰) 人事考課基準等의 制定) 會社가 從業員의 賞
罰, 人事考課 및 職務評価基準等人事에 關한 規則을 制

定하고저 할 때에는 事前に 組合과 協議하여야 한다.

(註) 組合의 同意를 얻도록함도 無妨할것이다.

第 17 條 (採用) 会社는 従業員을 採用하고저 할 때에는 事前に 採用計劃의 大綱 및 金償方法等에 關하여 組合과 協議하여야 한다.

(註) 이 條項은 会社側이 外部로부터의 人事에 對한

圧力を 排除하고 公正을 期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第 18 條 (修習期間) ① 会社가 新規採用한 者의 修習期間은 3 개 月로 한다.

② 修習期間은 勤続年數에 算入한다.

第 19 條 (異動) 会社가 従業員을 転勤, 配置転換 또는 他事業 場에 専任移換시키거나 其他業務變動에따르는 大量移動이 있을 때에는 事前に 組合과 協議決定하여야 한다.

第 20 條 (休職) 会社는 従業員이 다음 各号의 一에 該当할 때에는 休職을 命할수 있다.

1. 業務外の 負傷疾病으로 三個月以上 繼續缺勤하였을時
2. 自己의 事情으로 一個月以上 繼續缺勤하였을時
3. 兵役服務期間

第 21 條 (休職期間) 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 但 事情에따라 勞使協議下에 이를延長할수 있다.

~112~

1. 業務外의 負傷疾病 但 結核性疾患은 各該當期間의 倍로 한다

勤続 5年未滿 1年

勤続 5年以上 2年

2. 前條第2號의 境遇 3日

3 前條第3號의 境遇 該當期間

第 22 條 (休職者의 取扱) ①休職期間中은 通常賃金의 百分의五十을支給한다

②休職期間은 이를勤続年數에 通算한다.

③休職期間이 經過한者 또는 休職期間中이라 할지라도 그事由가 解消된者에 對하여 會社는 即時原職에 復職시켜야 한다

第 23 條 (停年) ①從業員의 停年은 滿 60세로 한다 但 必要에 따라 特定職種 또는 特定人에 對하여는 組合과 協議하여 이를 延長할수있다.

②停年勤勞者의 要請이 있을때는 그 直系家族의 優先採用을 認定한다.

(註) 企業運營上 또는 組合運營上특히 必要로하는 者에

對한 特例가 必要할것이며 職種에 따라 伸縮性있는 制度를 만들必要가 있다. 또한 會社側의 一方的인 停年年數의 引下는 勤勞基準의 低下로서 마땅히 排擊하여야

할것이다.

第 24 條 (賞罰委員會)의 會社가 從業員의 賞罰을 行하고자 할때

에는 賞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賞罰委員會는 會社組合同數의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③ 賞罰委員會의 選任은 別途로 規定한다.

(註) 同數構成은 絕對必經한 條件일것이다.

(第 2 案)의 從業員에 對한 賞罰은 會社가 이를行한다.

② 會社가 行한 賞罰事項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境遇에

는 勞務委員會에서 이를審議하여 是正할수있다

(註)의 組合이 組合員의 賞罰其他人事問題에 直接關與

한다는것은 會社側의 一方的인 不當處事을 牽制

할수있다는 長處이 있는反面에 組合이 利害關係

者의 不滿의 對象이될수있다는 點에서 慎重을

期할 必要가있을 것이다.

또한(第 2 案)의 境遇는 人事問題에있어 一旦決

定된 事項을 是正한다는것은 現實적으로 여러가

지 難矣이따를것이다.

第 25 條 (表彰) 會社는 組合員이 다음各호의 1 에 該當할때는

이를表彰한다.

1 技術上或은 事務上有益한 發明 또는 研究考案을하여

그結果가良好한者

~ 114 ~

2. 品行方正業務誠實하며 他의 模範이 되는者
3. 業務能率이 優秀한者
4. 災害의 未然防止, 또는 非常事態下에서 功勞가 있는者.
5. 永年勤続者
6. 其他善行, 또는, 特別한功勞가 있는者

第 26 條 (懲戒) 会社는 従業員이 下의 各号의 一에 該当할때에는 이를懲戒할수있다.

1. 正當한 理由없이 2 週日以上繼續하여無斷缺勤한者
2. 故意 또는 重過失로 会社에 莫大한 經濟的損失을 끼친者

第 27 條 (懲戒의 種類) 懲戒는 譴責, 出勤停止, 減俸, 免職의 4 種으로하고 다음에 依하여 이를行한다.

1. 譴責은將來를 위하여 訓戒한다.
2. 出勤停止는 一回에 3 日 以内의 限度로한다.
3. 減俸은 一回에 3 個月 以内に 限하며 基本給料月額의 二十分之一以内로한다.
4. 免職은 解雇予告 또는 予告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하고 行할수있다 但 이 境遇에는 労働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第 28 條 (解雇) 〇組合員이 下의 各号의 一에 該当할때는 会社는

組合의 同意를 얻어 解雇한다.

1 禁治産 또는 準禁治産宣告를 받았을때

2 休職期間滿了後에도 休職事由가 消滅되지 아니할때

3 休職期間滿了後에도 本人이 復職을 願하지 아니할때

② 前項第一號至第二號의 境遇에 있어서도 勤勞基準法第27

條의 2에依한 解雇予告 또는 30日分の 通幣賃金支給

에 關한義務는 阻却되지 아니한다.

第 29 條 (人員整理로서의 解雇) 會社は 業体の 売渡, 譲渡其他企

業整備上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従業員의 整理를 行하고

거할 때에는 事前に 組合과 協議決定하여야 한다.

(註) 大量解雇에 對한 對備策으로서 組合의 同意權을

確立할 必要가 있다.

第 30 條 (解雇制限) 第 28 條乃至前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業務

上 負傷 또는 疾病으로 療養中의 者및 治療后 30日間 및

産前産后의 女子의 休業期間 및 그後 30日間은 會社は 이

를 解雇하지 못한다.

第 31 條 (従業員은 本協約規定에 依하는外에는 休職 懲戒免職其

他従業員의 身分에 對하여 不利益한 取扱을 받지 아니함을

會社は 確認한다.

第 4 章 勞動時間與休日, 休暇

~116~

第 32 條 (労働時間) ① 日の労働時間は 7 時間으로 한다. 但 継続的業務에 對하여는 会社와 組合이 協定하여 이를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 労働時間이 8 時間を 超過할 때는 行政官厅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3 條 (休憩時間) ① 日の 休憩時間은 食事時間을 包含하여 1 時間으로 한다. 但 前條但書의 規定에 依할 때는 会社와 組合의 協定에 依하여 別途規定할 수 있다.

② 会社는 作業에 支障이 없는 限度內에서 従業員에게 一 齊히 休憩을 주어야 한다.

③ 会社는 休憩時間을 自由롭게 利用하게 하여야 한다.

第 24 條 (勤務) 勤務는 晝夜一番、二番의 交代制로 한다.

第 35 條 (勤務時間) 勤務時間은 次下하다.

1 晝間勤務 午前 8 時부터 午後 4 時까지

2 交代勤務

① 一番 午前 6 時부터 午後 2 時까지

② 二番 午後 2 時부터 午後 10 時까지

3. 第 1 号 및 第 2 号의 勤務時間中에는 休憩 및 食事時間을 1 時間을 包含한다.

4. 継続的業務에 對하여는 会社와 組合의 協定에 依한다.

第 36 條 (時間外 및 休日勤務) ① 左의 各号의 一에 該当할 境遇에는

第 32 條 및 前條의 規定에 拘束하고 会社는 組合과의 協

定에 依하여 従業員에게 時間外勤務 또는 休日勤務을 시킬수 있다.

1. 業務上不得已한 事情이有할時
2. 災害其他不可避한 理由로 臨時로 必要할時
- ② 前項의 協定期間은 1個月을 넘지 못한다.
- ③ 会社는組合員이 超過勞動 또는 休日勤務을 拒否한理由로 不利益한 取扱을 하지 못한다.

第 37 條 (時間外勤務의 休憩) 会社가 所定勞動時間을 超過하여 時間外에 従業員을 勤務시켰을 境遇에는 超過勞動 2時間마다 15分の 休憩時間을 준다. 但 該休憩가 食事時間에 該當할 때에는 45分을 주어야 한다.

第 38 條 (授乳時間) 生后一年未滿의 乳兒를 가진 女子에게는 第 33 條의 休憩時間外에 1日에 2回 1회에 30分의 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

第 39 條 (女子 年少者의 就業制限) 女子와 18歲未滿者에 對하여는 深夜作業(午後10時부터 午前6時까지)과 休日勤務 時間外勤務을 시키지 못한다. 但 会社와 組合의 協定으로 1日 2時間 一週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의 時間外勤務을 시킬수 있다.

(註) 法定基準以上の 保護規定을 設置하는의 義務가 있다.

第 40 條 (恒例) 所定 休 日 是 如 下 。

1. 定休日 毎週日曜日

2. 特定休日

가 年末年始 12月31日 부터 1月3日 까지 4日間

나 労働節其他法定公休日 会社創立記念日 労組(支部)

創立記念日

第 41 條 (休日의 代替 臨時休日) 会社는 業務上事情에 따라 組合協議下에 休日を他日로 代替 또는 臨時休日を 設定할 수 있다.

第 42 條 (代休) 休日に出勤한者는 2週間内に 代休를 請求할 수 있다.

第 43 條 (年次休暇) ① 会社는 1年間継続勤務한 従業員이 全労働日の 7割以上 8割未滿出勤한 者에 對하여 5日 8割以上出勤한者에 對하여는 8日の 年次有給休暇를 준다. 但 二年以上勤務한者에 對하여는 勤続年數每1年마다 1日을加算한 日數를준다.

② 年次休暇의 算定에 있어서는 第 47條의 特別休暇 및 正當한 節次를받아 休務한業務上 및 業務外의 重傷疾病 또는 出産과生理休暇等은 一切出勤한것으로한다

第 44 條 (休暇의 取扱) ① 年 月次休暇는 언제든지 請求할 수 있다.

但 休暇의 請求가 業務上支障이 有할時는 会社는 一時

期의變更을 勸告할수있다.

②年, 日次休暇를 그有効期間內에 使用치 못하였을 때는

時効의 前日에殘日數의 使用을 請求한것으로 한다.

(註) 第二項은 時効의中斷으로서 組合員을 懲罰하기 爲
한것이다.

第 45 條 (生理休暇) 生理休暇는 一末滿에 對하여 一日을有給으로
하고 2日을 無給으로 使用할수있다.

但 無給生理休暇의 境遇에도 賃金以外の 取扱은 一切出
勤한것으로 看做한다.

第 46 條 (産前産後休暇) ①会社는 出産休暇로서 産前은請求에 依
하여 産後는 請求에 依하지않고 各々 30日의 休暇를 주어
야한다.

但 診斷의 錯誤其他의 事由로 出産이遲延되어 産前休暇
가 30日을 超過하게되었을境遇에도 産后休暇는 30日
을주어야한다.

②会社는 妊娠中の 女子가 請求할時は 其의 輕易한 役
業에 轉換시켜야한다.

第 47 條 (特別休暇) ①従業員이 下의各号의 一에該當할時は 特別
休暇를 주어야한다. 但 特別 必要한境遇에는 会社와組合
이 協議하여 이를延長할수있다.

1. 求人結婚時 7日

~120~

2. 子女結婚時 3日

3. 同一家口内の兄弟姉妹結婚時 2日

4. 重의分娩時 2日

5. 親族死亡時 但 本人이 事實上葬禮를 主宰할時는 左

의 各條의 日數에 2日을 加算한다.

가 父 母 配偶者 5日

나 祖父母, 兄弟姉妹 配偶者의 父母 子女 3日

다 配偶者의 兄弟姉妹 同居의 親族 2日

라 別居의 總叔父母 甥姪孫 1日

6. 本人의 居宅이 天災事變으로 災害를 입었을때 必要한 期間

7. 流行病其他事故로 交通이 遮斷되었을때 必要한 期間

8. 住居移轉 1日

9. 裁判所其他公共機關으로부터 証人 鑑定人 參考人 으로서

出頭命令을 받았을때 必要한 日數.

10 轉勤時

① 單身赴任 4日

② 家族同伴赴任 7日

③ 單身赴任右家族移任 5日

④ 前項의 特別休暇는 遠隔地인 경우에는는 往復日數를
이에 加算한다.

第 48 條 (公民法行使의 使宜) 会社는 従業員이 勤務時間中選舉

其他公團으로서의 權利義務을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時間 또는 日數를 請求하였을때는 이를 許하여야 하며

이것을 理由로 会社는 不利益한 取扱을 하지 못한다.

第 49 條 (日直 宿直) ① 会社는 組合과의 協定에 依하여 滿 18 歲

以上の 従業員에게 日直、宿直勤務를 許可수 있다.

② 宿直한 다음날은 休務로 한다.

③ 日直、宿直을 관者는 休日勤勞와 同一한 取扱을 한다.

第 50 條 (出張中の 取扱) 会社는 従業員의 出張中の 休日は 勤

務관것으로 取扱한다.

第 5 章 賃金、一時金 및 退職金

第 51 條 (諸給與의 協定) 従業員의 賃金、一時金 및 退職金等給與에

關한 事項은 本協定에 明示된 以外에 会社와 組合이 協

議決定한다.

第 52 條 (賃金計算의 日數及支給方法) 賃金은 每月 20 日에 日數

하여 25 日에 通貨로서 本人에게 直接支給한다. 但 支給

日이 休日일 境遇에는 그前日로 한다.

第 53 條 (非常支拂) 前條에 不拘하고 従業員이 下의 各号의 一에

該當할때에는 本人 또는 遺族의 請求에 依하여 居住의

勞働에 對한 賃金을 그어마다 支給한다.

~122~

1. 本人死亡時
2. 退職 또는 解雇時
3. 本人 또는 妻의 出産時
4. 本人 또는 家族의 喪葬行事로 經費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
5. 天災事變 또는 負傷疾病으로 費用이 必要할 때

第 54 條 (控除) 下の 各号에 定한것은 賃金에서 控除할 수 있다.

1. 勤勞所得稅
2. 食 費
3. 保險料
4. 勞働組合費 共濟組合費
5. 医療費
6. 借用金 假拂金
7. 其他会社와 組合이 協定한것

第 55 條 (賃金) 会社와 組合은 相互協力하여 生産性の 向上을 圖謀하는 同時에 組合員의 生活費保障 및 同一勞働同一 賃金の 原則에 賃金에 關한 協定을 別途로 締結한다.
(註)

1. 賃金の 具體的인 規定은 各会社와 組合의 實情에 依도
或 別途協定으로서 條文化하기 바란다.
2. 基本賃金

所謂基準賃金이라고도 불리우는 基本的인 것으로서 大
體로 月給과 日給으로 分類된다.

月給에 있어서는 學歷, 經歷, 技術을 參照하여 初任給을
基準으로 하는 一定한 勞務制度에 依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있고 日給제에 있어서는 月給제에 準하는 外에
船率給制, 精勤給等이 있는데 作業精勤制度는 勞働者의

擡取에 依하기 爲함으로 勞働者의 人格을 尊重하여 自
願적으로 船率을 올릴수 있는 賃金制度가 要望된다.

昇給은 每年一回 또는 數回 定期的으로 實施함이 常
을 것이다.

3. 諸手当

勤勞基準法上의 諸手当以外에 家族手当, 住宅手当, 通
勤手当, 坪地手当, 特殊作業手当, 職務手当 特殊技能手
當 物価手当, 精勤手当 等 企業實情에 比하여 適宜決定
할 것이다.

4. 一時金

一時金を 金類 또는 支給率로서 規定짓는다는 것은
특히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困難한 問題라고 본다. 따라
서 이것은 支給回数를 規定짓는 程度로 하고 社會는 從
業員들에게 賞與一時金其他名目の 如何를 不問하고
本協約或은 会社와 組合同의 賃金協定以外에 臨時로

賃金を支給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に 組合과 協議決定하여야 한다」라고 明文化해 줄 필요가 있다.

5 職務給制를 採択할 경우에는 特別 年功序列給에 依한 既得權의 保障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労働强度의 強化 定期昇給의 封鎖, 中高年令層에 對한 昇溫의 低下와 人質整理에 依한 犧牲者의 救済等 充分 對策이 必要할 것이다.

第 56 條 (退職金) ① 会社는 組合員이 退職하는 解雇되었을 때는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勤続年數一年에 對하여 60日分の平均 賃金を 退職金으로서 支給한다. 但 勤続年數가 1年未滿인 境遇에는 同別로 計算하고 同未滿은 이를 一日로 한다.

② 会社는 前項의 退職金에 相當한 金額을 毎月積立한다.

③ 臨時工 및 修習期間도 前項의 勤続年數에 通算한다.

④ 退職金의 計算期間은 入社日로부터 退職日까지로 한다.

⑤ 勤続年數에 端數가 生하였을 때는 同別로 計算하고 一日未滿은 이를 一日로 한다.

⑥ 懲戒解雇其他勤勞者의 故實事由로 因한 解雇者에 對하여도 當然히 本條의 退職金을 支給한다.

第 6 章 安全과 保障

第 57 條 (安全保健施設과 工運營) ① 会社는 安全保健에 必要한 施

125
設을 完備하고 從業員의 健康増進 및 危害防止에 努力한다.

② 安全保健施設을 民主的으로 運營하기 爲하여 会社組合 同數의 委員으로서 構成하는 安全、保健委員會를 둔다

③ 安全、保健委員會의 規定은 会社와 組合이 協議하여 別途制定한다.

第 58 條 (健康診斷) ① 会社는 1 年에 對하여 定期的으로 4 回, 必要할 時는 臨時로 從業員의 健康診斷을 行한다.

② 從業員은 理由없이 前項의 診斷을 拒否하지 못한다.

但 他醫師의 健康診斷을 받고 그結果를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하였을 時는 例外로 한다.

③ 健康診斷을 担当하는 醫師는 会社와 勞動組合이 서로 協議하여 每回마다 이를 指定한다.

第 59 條 (女子、年少者未經驗者保護) 会社는 年少者 女子 및 未經驗者에게 危險或은 安全保健上有害한 業務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第 60 條 (就業禁止) ① 会社는 傳染病 精神病 또는 勞動함으로써 病勢가 惡化될 憂慮가 있는 從業員에 對하여는 組合과 協議하여 就業을 禁止한다.

② 前項의 就業禁止를 받은 者의 處遇는 第 22 條에 準한다.

~126~

第 61 條 (要保護者の 取扱) ①会社는 前條以外에 特別 保護를 必要로하는 従業員의 就業을 制限하고 또는 一定期間을 定하여 輕易한 休養에 轉換시키며 其他 治療上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있어 賃金 其他 待遇는 正當勤務와 同一하게 取扱한다.

第 7 章 福祉 厚生 및 職業訓練 其他 教育

第 62 條 (会社의 責任) ①会社는 従業員의 福祉 厚生을 爲하여 組合 協效下에 社宅 寄宿舍 (附屬施設 寢具 等 已含 以下同) 沐浴所 更衣室, 浴場, 食堂 調理室 飲料水 및 便所 等의 施設을 完備한다.

②前項의 施設의 管理 및 運營은 会社와 組合 協效下에 行히 되 且 經費는 会社가 負擔한다.

第 63 條 (給食) ①会社는 寄宿舍生 및 通勤者中 希望者에 對하여 給食을 實施한다.

②給食에 對하여는 特別 衛生과 栄養에 留意하여야 한다.

第 64 條 (養成教育) ①会社는 新規採用者에 對하여 団体協約敎育規則 및 安全保護 其他 職務上 必要한 敎育을 實施한다.

②会社가 職業訓練法에 依한 社内敎育訓練을 實施할 때 또는 前項의 敎育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그 企画과 運營에 關하여 組合이 參與한다.

~120~

第 65 條 (一般教育訓練) 会社는 前條의 養成教育以外에 組合과 協
議하여 一般教育訓練을 實施한다.

第 66 條 (教育計劃과 經費) ① 前 2 條教育訓練을 爲하여 会社와
組合의 同敎人員으로서 教育訓練委員會를 構成하되 그規
程은 兩者協敎下에 決定한다.

② 前第 2 條의 教育訓練上必要한 經費는 一切 会社가 負擔
한다.

第 67 條 (社外敎育) 会社는 從業員이 受講 就學等社外敎育을 希
望할 때는 可能한 限 作業轉換 勤務時間의 變更等으로
便宜를 供與한다.

第 68 條 (廢吊金의 支給) 会社는 從業員의 廢吊行爲에 對하여
廢吊金を 支給한다. 廢吊金의 規定은 会社와 組合이 協
議決定한다.

第 8 章 災 害 補 償

第 69 條 (治療費의 負擔) ① 会社는 從業員이 業務上 負傷하거나 또
는 疾病에 걸렸을 境遇에는 그治療費를 負擔한다.

②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從業員에 對하여는 會
社는 治療費外에 療養에 關한 一切의 費用을 負擔한다.

但 治療用始後二年이 經過하여도 完治되지 아니하여 平均
價金의 420日分의 一時補償을 行하였을 때는 그以後의

~128~

補償을 아니 할수 있다.

(註) 勤基法第 84 條에는 療養期間 1 年 / 時補償額 4 日分
으로 되어 있다.

第 70 條 (休業補償) ① 従業員이 業務上의 負傷 疾病으로 因하여
就業하지 못할 때는 会社는 平均賃金의 100 分の 80 을
支給한다.

② 休業補償의 支拂期日에 對하여는 第 52 條 및 53 條의
規定에 準한다.

(註) 休業補償은 業務上疾病에 있어서는 法定補償率보다
高率인 100%로 하였다.

第 71 條 (障害補償) ① 従業員이 業務上負傷하거나 또는 疾病에
걸렸다가 完治되었을 境遇身體에 障害가 있을 때는 会社
는 그 障害의 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을 下表의 日數에 乘한
金額을 補償한다.

第 1 級	1,200 日分	第 2 級	1,000 日分
第 3 級	800 日分	第 4 級	600 日分
第 5 級	500 日分	第 6 級	400 日分
第 7 級	300 日分	第 8 級	200 日分
第 9 級	150 日分	第 10 級	100 日分

② 前記의 障害補償等級은 勤勞基準法施行令第
48 條의 別表에 依한다.

第 72 條 (遺族補償 葬祭費) ①從業員이 業務上의 負傷疾病으로
 因하여 死亡하였을 境遇遺族이 있을 時는 会社는 그 遺族에
 對하여 平均賃金의 1200日分의 遺族補償을 行한다.
 ②從業員이 業務上의 負傷 疾病으로 死亡하였을 時는 社
 葬을 行하는 同時에 葬祭費로서 平均賃金의 百日分을 支
 給한다.

第 73 條 (分割 補償의 禁止) 障害補償에 對하여는 그 等級이 確
 定된 날로부터 遺族補償에 있어서는 死亡日로부터 15日以
 内に 会社는 金額을 權利者에게 支拂하여야 한다.

第 74 條 (業務上의 負傷 疾病 死亡의 調査 取扱) ①業務上의 負
 傷 疾病或은 死亡 및 身體障害等級의 認定에 關한 調査는
 勞使同數로 構成하는 安全保健委員會에서 이를 行한다.
 ②從業員이 過失로서 業務上 負傷하거나 疾病에 걸렸거나
 或은 死亡하였을 時, 및 業務上이였다는 事實이 明確치 아
 나하므로서 이에 對한 諸般給付가 不如意하거나 制限될
 때는 安全保健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이를 業務上 負傷 疾病
 死亡에 準하여 取扱하되 一時補償, 障害補償, 遺族補償에
 對하여는 第 69 條 第 2 項 第 71 條 및 第 72 條 所定額의 5割
 以上の 範圍內에서 査定補償한다.

(註) 勤勞基準法 第 81 條에 依하여 勞働委員會의 認定을
 받기 前에 安全保健委員會에서 暫時的으로 解決하도

~ 130 ~

록한다.

第 75 條 (産災保險給付額の控除) 本章에 規定한 補償金은 産業災害補償保險金の 給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給付한 金額의 差額을 支給하기로 한다.

第 76 條 (退職者の求償權) 本章의 補償을 받은 權利는 退職을 하더라도 喪失되지 아니한다.

第 9 章 團體交渉

第 77 條 (團體交渉) ① 会社 및 組合은 그 어느 한 쪽으로부터 團體交渉을 要求하였을 때는 即時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要求는 交渉日時 場所 및 要求事項 또는 附設事項을 갖추어 書面으로서 代表者가 記名捺印한 다음 相手方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78 條 (交渉單位) ① 会社는 組合이 正當한 交渉單位임을 確認한다.

② 会社와 組合은 各事業所對組合支部 또는 分會同의 問題에 關하여 会社와 組合同의 協定事項에 抵触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團體交渉을 行한다.

(註) 本條는 産別組織의 強化를 爲해 必要한 것임

第 79 條 (交渉事項) 團體交渉의 対象이 되는 事項은 從業員의 勤勞條件 其他週遇에 關한 事項 및 이에 關聯있는 一

切의 事項으로 한다.

第 80 條 (交渉委員) 団体交渉의 交渉員은 会社및組合이 各各選任하여 相對方에 通告한다. 또한 交渉途中變更할때도 이와 같다.

第 81 條 (協約書의 作成) 団体交渉事項이 合意에 到達하였을時는 協約書 (또는 協定書合意書等) 를 作成한 다음 会社 組合雙方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10 章 勞使協議制度

第 82 條 (勞使協議會) ① 会社와 組合은 組合員의 苦情處理經營參與其他 団体交渉等 必要한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双方代表로서 勞使協議會를 構成한다.

② 各事業場 및 支部分會間에도 同一한 協議會를 둘 수 있다.

③ 勞使協議會에서 決定한 事項은 法令 및 本協約의 基準을 下廻하지 않는 限 団体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④ 勞使協議會는 会社代表 組合代表 各同數로 構成한다.

⑤ 勞使協議會의 構成員 運營等에 關한 細部的規定은 会社와 組合이 協議決定하는 別途規程에 依한다.

(註) ① 構成은 従業員中心制을 採하고 반드시 組合員中心制로 하여야 한다.

⑥ 勞使協議會가 生産性向上에 關한 事務協議를 行할

경우에는 그成果에 對한 適正分配率의 策定이 先
行되어야 할것이며 成果配分の 保障이 없는 生産性向
上運動은 勞動力을 搾取營하는 結果가 되기 쉽다는
점에 注意하여야 할것이다.

第 11 章 爭議協定

第 83 條 (斡旋、調停、申請) 第 9 章의 団体交渉 및 前條의 勞使
協議로서 解決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会社 組合 어느
쪽에서든 労働委員會에 斡旋 또는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第 84 條 (仲裁) 前條의 斡旋 또는 調整이 失敗에 돌아갔을 때에도
爭訟調整法 第 30 條 第 3 号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会社와
組合 双方의 名義로서 仲裁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 85 條 (爭訟行爲中의 日常生活) 〇 会社는 組合이 爭訟行爲中일
지라도 組合員의 正常의 日常生活을 保持케 하기 爲하
여 寄宿舍 沐浴場 医務室 其他 厚生施設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食料 其他 生活必需品의 調達을 阻害하지 못한다.
〇 会社는 爭訟行爲中일지라도 寄宿生에 對한 給食을 平常
時와 같이 繼續하여야 한다.

第 86 條 (施設의 利用) 会社는 組合이 爭訟行爲中일지라도 本
協定 第 12 條 및 第 13 條의 会社施設利用은 이를 認定한다.
(註) 会社의 " 屋 舍 " 에 對한 附屬廠으로서 必要하다.

~135~

第 87 條 (協定勤務者)의 爭議行爲中일지라도 左의 各号의 一에 該當하는 作業에 從事하는 組合員은 協定勤務者로서 作業에 從事한다 但 其數는 必要한 最少限度로 하여야 하며 또한 組合幹部는 協定勤務者로 算수 없다.

1. 事業場의 安全保持施設維持上必要한者
 2. 從業員의 日常生活에 直結된 業務에 從事하는者
 3. 其他会社와 組合이 協議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者
- ② 協定勤務人員의 勤務에 關한 細部的規定은 会社와 組合이 協議決定한다.
- ③ 会社는 爭議行爲中第3條에 規定된非、組合員인 從業員의 第1項의 人員外에는 如何한 名目으로도 新規採用 또는 就業를 시키지 못한다.

第 88 條 (爭議行爲中의 災害) 爭議行爲中일지라도 事業場의 施設에 災其他非常災害가 發生하였을때 또는 發生이 予則되어 危險狀態에 있을 때는 組合은 鎮壓 또는 防止에 처하여 会社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 12 章 協約의 期間 및 效力

第 89 條 (有効期間) 本協約의 有効期間은 年 月 日 부터 年 月 日 까지로 한다.

第 90 條 (改定의 節次) 本協約의 期間滿了에 際하여 会社 또는 組合의 어느一方에서 이를 更新하고자 할 때는 期間滿了 1 個月前까지

~ 134 ~

지 更新案은 添附하여 相手方에 提出하기로 한다.

附 則

第 91 條 (協約書의 保管) 本協約書는 2通을 作成하여 会社와 組合의 代表者가 署名 捺印하고 双方各 1通씩 保管한다.

年 月 日

。 。 株 式 會 社

取 締 役 社 長 。 。 。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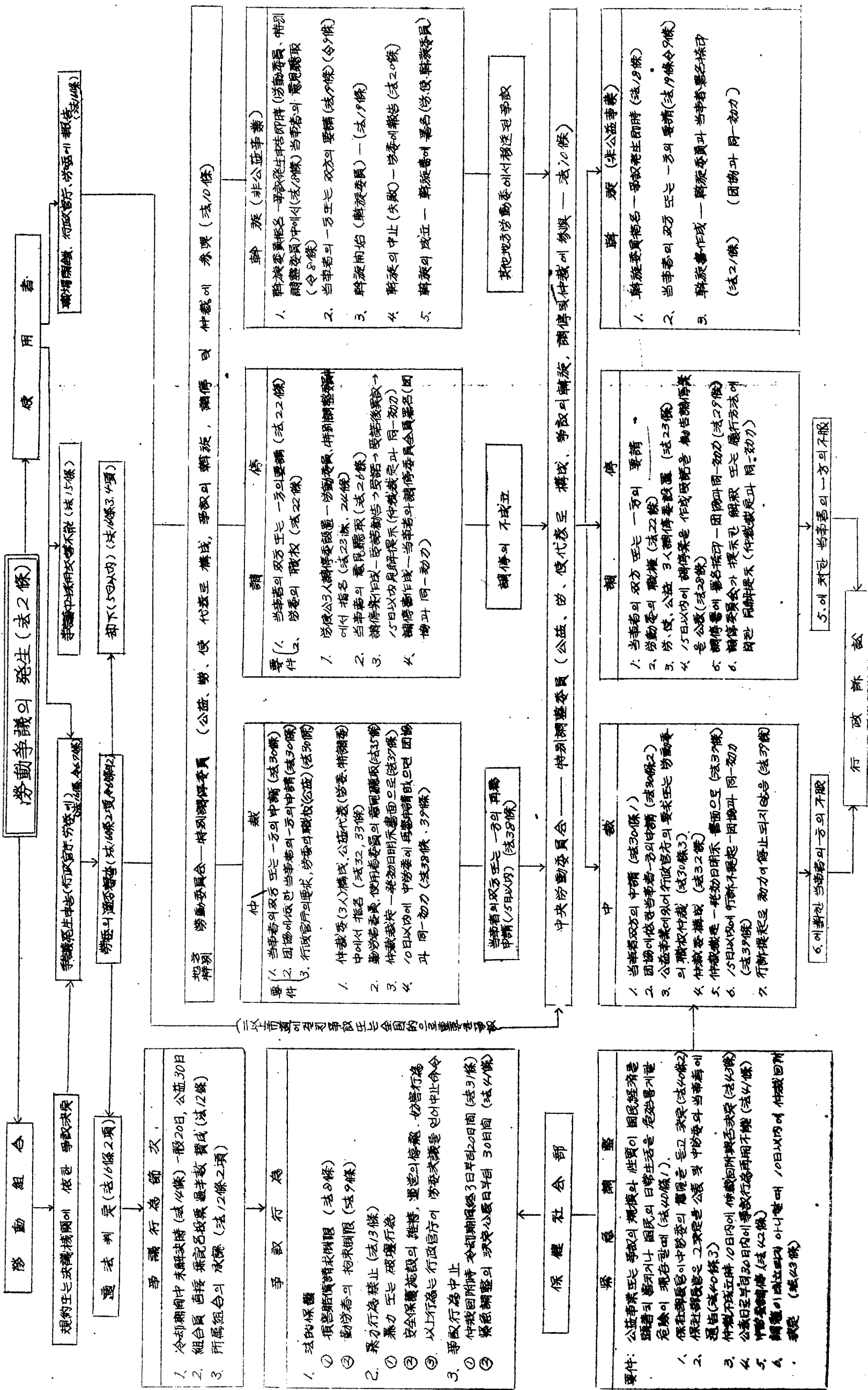
。 。 勞 働 組 合

任 員 長 。 。 。 印

爭議關係

爭議節次表

—137—



支部分會別爭議一覽表

1967.4.1-68.3.31

支部分會別	區分	爭議件數	解決與否		參加人員	發生事由							
			解決	未決		賃金引上	福利金	加班	労務外	福利金	福利金	其他	計
韓永産業分會		1	1		39	1				1		1	3
大韓電線分會		1	1		380	1				1		1	3
韓國特殊項分會		1	1		180	1				1	1	3	6
重工業支部		1		1	974	1							1
朝鮮企業分會		1	1		400	1		1	1	1		3	7
計		5	4	1	1923	5		1	1	4	1	8	20

1. 韓永産業分會爭議發生經過

1. 組織體名 全國金屬勞組永登浦支部 韓永産業分會
1. 代表者 支部長 金炳龍 (分會長 朴昌若)
1. 事故發生地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永登浦洞4가160
1. 事業場名 韓永産業株式會社
1. 代表者 洪 憲 亨
1. 事業種類 各種기계, 부속가공, 자동차스리브제작
1. 爭議發生日序 1967. 5. 29 (참가인원 39名)
1. 爭議目的 1. 賃金引上 60%

2. 단체협약 갱신 체결

3. 年償與金 200% 支給要求

1. 労働争訟發生 認定承認日付 1967. 6. 13.

2. 1967. 7. 4 協定書請印

全国金屬労組、永登浦支部 韓永産業株式会社 韓永

産業株式会社는 相互 信義와 協助로서 雇傭의 번영과 組合員의
福利증진을 위하고 勞使紛爭을 事前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合款協定한다.

(1) 67. 6. 1 부로 基本賃金 90% 以上 異行한다.

(2) 단체협약 갱신체결은 조속한 시일내 체결한다

(3) 노임지불일자를 엄수하고 체불하지 아니한다.

(4) 本社は 労組本會長の 組合活動時間을 認容하고 最大의 편의
를 도모한다.

以上과 같이 合款協定하고 67. 5. 29 發生한 労働争訟을 取
下한다.

1967. 7. 4

韓永産業株式会社

代表理事 洪 澤 亨

全国金屬労組永登浦支部

支部長 金 炳 龍

韓永産業分會長 朴 昌 柱

3. 大韓電線分會 爭執發生經過

1. 組織體名 全國金屬防組永盛補支部 大韓電線分會

1. 代表者 支部長 金 炳 龍 (分會長 趙 王 行)

1. 爭執發生地 仁川特別市永盛補區 香山洞738

1. 事業場名 大韓電線株式會社

1. 代表者 金 昌 浩

1. 事業種類 各種電線 製造

1. 爭執發生日付 1967. 2. 26

1. 爭執目的 1. 賃金引上 60%

2. 退職金引上 30%

1. 참가인원 男 320名 女 60名 計 380名

1. 承認日付 1967. 2. 31

4. 67. 9. 11 合意書調印

1. 賃金引上

年例 (1966年度) 賃金引上芳表에 準하되 (年間 30%

昇給 臨時昇給) 1967年9月1日付로 臨時昇給을 施行한다.

但 長期昇給은 1968年 1月1日付로 施行한다.

2. 團體協約 更新利結은 院後協約下에 빠른 時日內에 체결한다.

위와 같이 相互 合意하여 1967. 2. 26 發生한 勞動爭執

는 取下한다.

1967. 9. 4

大韓電線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景 浩

全國金屬勞組永登浦支部

支部長 金 炳 龍

5. 韓國特殊工具分會爭議經過

1. 組織體名 全國金屬勞組 永登浦支部 韓國特殊工具分會
1. 代表者 支部長 金 炳 龍 (分會長 李 奇 鳳)
1. 爭議發生地 仁川特別市永登浦區楊平洞 5 才 1
1. 事業場名 韓國特殊工具株式會社
1. 代表者 社長 金 在 冕
1. 事業種類 各種工具製作
1. 爭議發生日等 1967. 12. 28
1. 爭議目的
 1. 賃金引上 50%
 2. 단리형의 개선利率
 3. 團體協約履行
 4. 年末償還金 120% 要求
 5. 物価手当 30%
 6. 家族手当 1人 500 支給
1. 参加人員 男 180 名

1. 認往承認日付 1968. 1. 4.

6. 68. 1. 16. 協定書 關印.

勞使協定下에 67. 12. 28 發生한 勞動爭執를 다음과 같이
協定關印하다.

1. 会社는 全勤勞者의 勞賃을 68. 4. 1 付로 30%를 引上한
다. 但 衡平상 소급해서 시행할수 있다.

2. 団体協約更新條條에 다음 事項을 挿入한다.

(1) 五대國喪日

(2) 退職金累進制

(3) 物価手当 및 家族手当

3. 組合은 会社 形便을 參酌 67年度 賞與金은 通常賃金의
90%를 支給받기로 한다.

1968. 1. 16.

韓國特殊工具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在 冕
朝鮮重工業株式會社

全國金屬勞組永登浦支部 支部長 金 炳 龍

韓國特殊工具分會 分會長 李 香 鳳

7. 重工業支部勞動爭執發生經過書

1. 組織體名 全國金屬勞組 仁川重工業支部

1. 代表者 支部長 朴 允 興

1. 爭執發生地 仁川市 松峴新 1

~ 144 ~

1. 事業場名 仁川重工業株式会社
1. 代表者 会長 李 東 俊
1. 事業種類 製 鋼 業
1. 争訟発生日付 1968. 3. 25
1. 争訟目的 現行賃金 50% 以上要求 (68. 1月1日、소
금지금)
1. 参加人員 男 952名 女 22名 計 974名
1. 認定承認日付 1968. 3. 30

現在 進行中

8. 朝鮮企業分会 争訟発生経緯

1. 組織体名 全国金属労組 廣北支部 朝鮮企業分会
1. 代表者 支部長 李 成 学 (分会長 林 泰 乙)
1. 争訟発生地 大邱市 七屋村 123
1. 事業場名 朝鮮企業株式会社
1. 代表者 社長 李 煥 熙
1. 事業種類 알미늄제품
1. 争訟発生日付 1968. 3. 6
1. 争訟目的
 1. 賃金리上 50%
 2. 부당해고자 복직
 3. 양성공회저임금 1일 100원 이상요구
 4. 정월시 노임 공제 제도 폐지

5. 신입수련공 55시간

미숙련공 150시간 무급제도 폐지

6. 법정 퇴직금 지급요구

7. 단체협약 체결 요구

1. 参加人員 男 357 女 43 計 400

1. 開催承認日付 1968. 3. 8

進行事項

1968. 9. 12. 慶北地方労働委員会로 부림 2법판정

내각기자중 会社側과 交渉하였으나 이에 불응 병각기. 만료로 정
의행위 거부 투표

1. 투표日時 1968. 4. 3. 下. 4時30分~7時

2. 투표장소 朝鮮企業社 正門前 路上 21處

3. 투표목적 爭執行爲可否

4. 투표참가자 男 357 女 43 計 400

5. 開票結果 可 366 否 24 無 7 計 400

6. 開票時間 1968. 4. 3. 下午7時10分~7時30分

7. 開票場所 自動車労組 경북지부 합승탄회사무실

8. 開票参加者

韓國労總 慶北道協議會事務局長 金 南 鎬

全國金屬労組 慶北支部事務局長 河 俊

自動車労組 慶北支部 聯合分會會長 李 相 欽

9. 立 合 人

東大邱署 情報係 柳 秉 鉉

以上과 같이 報告하여 本組 規約 第67條에 根據 承認行爲
承認

1968. 4. 9 全員 파업돌입 경북도 협의회, 후원, 과 각
日刊紙에 記載報導

1968. 4. 11. 勞使間 合意書 調印

合 意 內 容

1. 使用者는 勞動組員에 對하여 勤勞基準法상의 모든 權益을 보장하고 勞動組合은 合社의 시설을 保護하고 生産性向上에 積極 協助한다.
2. 使用者는 68.2末 現在의 賃金에서 30%를 68. 4. 1 부터 引上한다.
3. 使用者와 勞動組合은 合意와 同時 団体協約을 체결한다.
4. 使用者는 사용기관에도 同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5. 使用者는 慶尙北道 勞動委員會의 撤消命令을 履行한다.
6. 68. 3. 5 이후의 모든 사례에 對하여 使用者는 보복하지 않으며 노자간의 모든 문제는 노사협의하에 행한다.
7.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68. 4. 12 04.00을 기하여 중지한다.
8.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신청 및 고발사건은 68. 4. 11

자로 취하한다.

9. 사용자는 임명령의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0. 사용자는 복지회를 해산한다.

11. 위 합의내용은 노사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한다.

추가. 사용자는 68. 4. 20 한 3월분 임금을 지급한다.

1968. 4. 11.

대구시 북구 칠성동 123

朝鮮企業社

社長 李 養 根

副社長 이 재 섭

大邱市 中区 鍾路 1가 60

全國金屬勞動組合慶北支部

支部長 李 成 學

支 會 人

慶尙北道地方勞動委員會

事務局長 조 현 두

慶尙北道 社會課 勞政係

係 長 신 흥 우

教 宣 関 係

勞總一般教育講座

1. 第16回 1967. 4. 28 ~ 4. 29 木川

1) 受講対象. 各會員組合 支部 與 分會幹部

2) 主要講義科目

※ 韓國勞動運動의 基調와 方針

※ 地域社会開発과 地域勞動組織의 役割

※ 勞動法解説

※ 労使関係의 理論과 实践

3) 講師陣. 労總과 各産別労組의 内部講師 特殊専門科目은 大学
教授 外部 専門家

4) 受講者

京畿支部 李 英 珠, 李 萬 福, 李 振 彰

2. 第20回 1967. 4. 20 ~ 4. 21 大邱

受講者 慶北支部 副支部長 朴 丁 屏

3. 第23回 1967. 4. 25 ~ 4. 26 光州

受講者 全南支部長 李 義 景

4. 第24回 1967. 4. 24 ~ 4. 26 釜山

受講者 新進支部長 鄭 致 度

“ 事務長 姜 春 吉

金星社支部長 崔 鍾 圭

5. 第26回 67. 4. 29. ~ 4. 30 長省

受講者 三陟支部 洪 尊 明 金 昌 圭 柳 振 烈

权 三 麗 孫 鳳 植 趙 達 齊

6. 第27回 67. 8. 18. ~ 8. 19 永登浦

受講者 永登浦支部 李 相 綏 李 孝 子

朴 章 浩 吳 重 赫 宋 浩 鎔

元 尚 濤 姜 炳 一

2. 兵務訓練講座

各會員組合本部 및 支部兵務課의 業務遂行 能力을 培養하여
가장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業務執行에 아바지 하기 위한 勞總
兵務訓練 講座에 다음과 같은 改正로 수강 하였다.

1) 第7回 67. 9. 7 ~ 9. 9 勞總本部

※ 新聞편집의 理論과 兵隊

※ 新聞의 原理

※ 職務給制度의 算入技法

2) 受講者 本組 總務課長・李 康 求

3. 第1回 兵務訓練講座

새로 改正된 세법의 요령을 습득하여 組合運營의 安全을 도
모하고서 組合會計와 稅務에 關한 兵務講座를 다음과 같이 受
講하다.

1) 日 時 1968. 2. 13 ~ 14 ~ 2日間

2) 場 所 勞總會議室

3) 강의과목 및 강사

가. 組合會計 조 창 화 (노동자료실장)

나. 세무요령 최 기 덕 (세무사)

4) 회원조합 및 傘下 在京支部의 회계 담당자 (회계 감사위원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

5) 授講者

所	屬	姓	名	所	屬	姓	名
本	組	李	景 求	金星社交部		吳	錫 澤
永登浦支部		姜	秉 一				
"		辺	始 鉉				
"		李	義 松				
"		李	相 肉				
"		床	壽 蓮				
"		趙	王 行				
"		尹	相 勲				
京畿支部		池	明 植				
"		金	貞 吉				

4. 全国女性大会代表파견

一般 女性団体の 主權로 全国女性指導者들이 모여 일반 女性 단체의 活動현황과 互대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1) 月 時 1967. 9.28 ~ 29 2日間

2) 場 所 德成女子大學校 강당

3) 代表參加者 婦女部長 金 外 順

5. 第1回 一般勞動教育講座實施

國際金屬勞聯 (IMF) 후원과 本勞組 67年度 事業計劃中 各級 幹部 (分會幹部 以上) 教育訓練計劃에 根據 다음 計劃書와 같이 勞動 教育講座를 실시하다.

(1) 月 時 1967. 12. 11 ~ 12. 14

(2) 場 所 서울特別市 中區 南泰洞

女性會館 小講堂

全國金屬勞動組合幹部教育計劃書

1. 金屬勞動組合의 教育理念

진전한 金屬勞組의 發展을 위하여 組合員 및 組合幹部의 인격도야와 확고한 勞動組合指導理念을 고취시키고 組合員의 자질 향상과 연대 의식을 함양하며 組合 幹部로 하여금 理論의 무장과 實務의 능력을 향상시킴을 本組合 教育理念으로 한다.

2. 金屬勞動組合의 教育方針

組合의 教育理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組合員 및 組合幹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教育訓練을 實施한다.

(1) 一般教育

組合員 및 組合幹部의 인격도야를 위한 一般敎養 講座와 勞動運動의 基本理念에 關한 講座를 實施한다.

(2) 實務教育

組合幹部로 하여금 一線 組合員의 指導力과 勞動組合 活動의 實務능력을 向上시키는 專門講座를 實施한다.

3. 第一回 幹部教育實施의 根據

組合의 長期 및 단기教育計劃 67年 全國代表員大會 組合事業計劃中 各級幹部 (分會幹部 以上) 教育訓練計劃에 依據하여 實施한다.

4. 第二回 幹部教育의 主目的

- (1) 労働組合의 指導理念과 그 機能을 충분히 理解시켜 理論의 立場을 시킨다.
- (2) 各級幹部의 職務遂行 能力을 증진시키는 同時에 使命感을 부여한다.
- (3) 各級幹部로 하여금 国内外、政治、經濟 社會 변동 一般에 對한 認識을 높여 組合活動의 광범위한 목적을 達한다.
- (4) 各級幹部로 하여금 一般組合員訓練의 指導者를 養成한다.

5. 第一回 幹部教育 주된 개요

- (1) 組合現況 및 進路를 설명하며 各級幹部로 하여금 現狀을 理解하고 비판하여 未來에 對한 새로운 "비전"을 勾勒 시킨다.
- (2) 労働運動의 原則적인 事項 즉 그 理念歷史 및 機能을 理解시켜 理論 立場을 시킨다.
- (3) 労働組合活動의 自体業務의 訓練과 能力을 높여 職務遂行의 능력향상을 기한다.
- (4) 団体交渉活動의 理論과 實務를 認識시킨다.
- (5) 現行労働關係法의 向題點을 들어 組合活動의 法律上 向題를 再認識시켜 業務에 忠實토록 한다.
- (6) 労働組合의 經營參加方法과 生産性의 저장분배에 對한 理論과 實務를 해독시킨다.
- (7) 各級幹部들에게 複雑한 經濟的 社會的 諸問題에 對하여 一般적인 理解와 活動의 基礎지식을 부여한다.

6. 第一回 教育期間 및 場所

(1) 自 1967. 12. 11 ~ 至 1967. 12. 14

(2) 教育場所 女性會館

7. 被教育者 범위 및 人員

(1) 대상 범위 ... 全國各支部 및 分會幹部級

(2) 人員 50 名

(3) 期日 4 日間

8. 유의사항

(1) 本教育 受講자는 支部 및 分會幹部 이상으로 한다.

(2) 本教育은 合宿訓練으로 한다.

(3) 各支部는 配屬된 授課人員差出을 嚴守할 것이며 特別한 事情이 있을 경우 사전報告할 것

(4) 配屬된 授課者 名單은 開講 7 日前 報告할 것

配置人員

支部名	組合員数	分合数	配置人員	備考
金星社支部	3,700	1	5	
韓國機械	800	1	3	
重工業	900		3	
新進工業	800		3	
三井電機	500		2	
永盛硝	2,700	21	10	
釜山	1,300	7	5	
付島	1,200	9	5	
東鐵	900	9	4	
金南	150	5	2	
妻北	100	2	2	
慶南	200	2	2	
木南	150	3	2	
三勝	150	1	2	
計			50	

受講者守則

本守則은 教育의 效을 올리고 受講生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爲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受講生은 이守則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1. 受講生은 教育期間中 己人行動을 억제하고 團體질서를 確立하여야 한다.
2. 受講生은 同志愛를 발휘하여 인화조정을 기하여야 한다.
3. 受講生은 組合幹部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중의에 특종하여야 한다.
4. 受講生은 教育期間中 時間을 严守하여 教育責任者의 指示에 따라 規則적인 生活를 하여야 한다.
5. 受講生은 服裝을 단정히 하여 組合幹部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6. 受講生은 수업時間中에 흡연을 禁한다.
7. 受講生은 教育期間中 자발적인 수장의욕을 가져야 한다.
8. 受講生은 許可없이 教育場所를 이탈할수 없다.

주요.....受講生中 本守則을 위반할 경우에는 處소를 명할수 있다

수 강 원 서

소 속

지 부

분 회

직 위

성 명

①

생년월일

학력(최종출신교)	근속년한	조합간부경력

전국금속노조의 교육계획에 의한 제1회 일반교육 강좌에 수강

교제 원서를 제출 하나이다.

1 9 6 7 년 월 일

위 원 장 기 하

受講者名單

支部名	姓 名	支部名	姓 名
全南支部	李 聘 賢	永登補支部	李 相 南
全星社	鄭 澤 賢	新堡支部	李 相 錫
"	吳 玗 均	"	姜 瑟 吉
"	金 鍾 吉	京畿支部	尹 基 浩
"	呂 明 九	"	李 烈 在
"	吳 喜 澤	"	李 英 珠
永登補支部	朴 彰 若	仁恩支部	李 茂 山
"	李 鍾 輝	"	金 斗 三
"	趙 王 行	"	金 烈 今
"	姜 咄 一	韓城支部	朴 昌 奎
"	金 俊 電	"	鄭 萬 善
"	李 元 載	本組支部	李 萬 求
"	李 義 松	三 陟 "	方 昌 文
"	李 永 連		
"	李 奇 圖		
"	金 正 培		
"	咸 鎮 甲		
"	吳 重 赫		

受講案內

1. 本ノ回幹部教育講座는 組合의 1967年度 事業計劃中
教養事業의 하나로서 傘下支部・分會 幹部級을 対象으
로 實施하여,
2. 受講人員은 組合에서 各支部에 配定하고,
3. 受講人員數는 50名이 되고,
4. 受講申請은 各支部 代表者가 本組가 申請하며,
5. 受講生에게는 受講料 無料
・ 昼食・教材・學用品 提供.

0. 開 講 式

日 時 1967. 12. 11. 09:30

場 所 서울特別市中區南倉洞 (女性會館)

式 順

- | | | |
|--------|--------------------|---------|
| ① 開會人事 | 金屬労組委員長 | 朴 世 天 |
| ② 來賓祝辭 | 韓國労總委員長 | 李 贊 植 |
| ③ ” | 國際金屬労聯
日本協議會副會長 | 伊 藤 一 男 |
| ④ ” | 勞 働 庁 長 | 李 昇 暉 |

第一回幹部教育講座
日時科目及講師

月 日	時 間	科 目	講 師
12/11 ㊸	09:30-10:30	開講式	
"	10:40-12:00	金屬勞組進路方針	朴 世 天 (金屬勞組委員長)
"	13:00-14:30	國際金屬勞聯의 現況	伊 藤 一 男 (IMF, J.C)
"	14:40-16:00	國際金屬勞聯의 現況	瀬 戸 一 郎 (IMF, J.C)
12/12 ㊸	09:30-10:30	勞總의 運動基調과 方針	韓 基 洙 (勞總事務總長)
"	10:40-12:00	賃 金 論	趙 昌 華 (建國大學教授)
"	13:00-14:30	勞使關係論	"
"	14:40-16:00	団体交渉 與 協約	羅 文 燮 (勞總教育委員)
12/13 ㊸	09:30-10:30	職務給制度	李 次 龍 (金屬勞組國際部長)
"	10:40-12:00	労働法の 向題矣	羅 文 燮 (勞總教育委員)
"	13:00-14:30	不當労働行為와 救済申請	"
"	14:40-16:00	勞 動 法	計 甘 五 (勞動方勞政局長)
12/14 ㊸	09:30-10:30	労働組合의 目的과 技能	張 東 燦 (重工業支部長)
"	10:40-12:00	國際勞動運動史	韓 仁 根 (勞總國際部長)
"		開 講 式	

財政關係

歲入歲出決算書

自 1967. 4. 1

~ 12 個月

至 1968. 3. 31

歲入總額 1,296,793

歲出總額 1,295,093

差引殘高 1,700

歲入內訳

項 目	予算額	歳入決算額	対 比		備考
			増	減	
組 合 員	2,880,000	1,052,174		1,827,824	
未 收 金	815,295	97,500		717,795	
賛 助 金		15,000	15,000		
雑 收 入		28,000	28,000		
177F. 教育費残額		101,728	101,728		
現 金 い づ	2,391	2,391			
計	3,697,686	1,296,793	144,728	2,545,619	

自 1967. 4. 1
至 1968. 3. 31

減入減出決算書

項 目	予算額	決算額	対 比		備 考
			増	減	
義 務 金	480,000			480,000	
職 務 手 當	612,000	343,672		268,328	
経 料	120,000	46,000		74,000	
慰 勞 金	48,000	23,000		25,000	
事 務 費	36,000	23,107		12,893	
交 通 費	36,000	20,050		15,950	
通 信 費	84,000	45,624		38,376	
印 刷 費	36,000	2,730		33,270	
備 品 費	35,000	26,420		8,580	
電 信 料	12,000	12,340	+ 340		
電 豆 料	18,000	4,860		13,140	
雑 費	48,000	34,620		13,380	
大 會 費	100,000	99,410		590	
中央委員会費	30,000	2,680		27,320	
中報会費	30,000	4,250		25,750	
各種会費	20,000	9,190		10,810	
調 査 費	30,000			30,000	
統 計 費	12,000			12,000	

項 目	子算額	次算額	対 比		備 考
			増	減	
接 待 費	120,000	94,890		25,110	
通 信 料	60,000	47,100		12,900	
廣 告 費	36,000	15,300		20,700	
組 織 費	144,000	60,745		83,255	
整 備 費	60,000	5,670		54,330	
出 張 費	120,000	79,318		40,682	
爭 執 指 導 費	72,000	810		71,190	
活 動 交 渉 費	36,000	2,920		33,080	
勞 働 研 究 費	20,000	3,420		16,580	
其 他 行 事 費	36,000	1,110		34,890	
教 育 費	30,000	1,000		29,000	
機 關 紙 費	120,000	34,015		85,985	
新 聞 出 版 費	38,000			38,000	
寓 員 旅 費	6,000			6,000	
取 材 費	18,000			18,000	
廣 告 費	12,000			12,000	
國 際 費	120,000	57,125		62,875	
世 界 台	120,000	70,000		50,000	

項 目	予算額	決算額	対 比		備 考
			増	減	
予 備 費	119,784	7,798		111,986	
未 拂 金	606,902	115,900		491,002	
計	3,697,626	1,295,093	340	2,402,253	

義務金納付現況

1967. 4. 1

1968. 3. 31

支 部 名	年組金額数	義務額	納付額	未納額
金星社支部	40,932	491,184	367,236	123,948
輝国棧城 "	9,511	114,128	114,128	-0-
重工業 "	10,680	129,162	129,162	-0-
新 進 "	7,906	94,872	75,416	19,856
永盛浦 "	30,932	371,184	39,670	281,514
시 은 "	13,448	161,620	72,708	33,920
金 山 "	14,242	170,904	126,264	44,640
輝国卅아령 "	515	6,180	6,180	-0-
京 畿 "	10,932	131,184		131,184
全 南 "	1,534	19,008	9,500	9,508
慶 南 "	2,624	31,438	2,556	28,932
慶 北 "	2,961	35,532		35,532
三 洋 "	5,703	68,436	40,000	28,436
永 浦 "	1,398	16,176	-0-	16,176
濟 州 "	327	3,924	-0-	3,924
忠 南 "	479	5,968	3,494	2,314
上 陞 "	1,760	21,120	9,720	11,400

勞總義務金未納現況

月 別	組合員數	告知額	未納額	備 考
67.年 9月	4,173	8,346	8,346	
10	8,320	12,640	12,640	
11	9,145	18,290	18,290	
12	10,942	21,884	21,884	
68. 1.	5,127	10,254	10,254	
2	2,249	4,498	4,498	
3	12,401	24,802	24,802	
計	50,357	100,714	100,714	

特別會計決算書

(收入内訳)

項	目	金額	内 訳
教育費		494,880	国際金融協定 (IMF) 教育補助費 80 ^{SFR} / SFR 61 ⁸⁶ (67.11.25)
	教育費	280,000	
	雑費	214,880	

支出内訳

項 目	金額	内 訳
활동비	10,000	IMF. 강사 안내활동비 (체 항공
항공료및잡비	80,000	항공요금 2인분 및 잡비
접대비	59,000	IMF. 강사 접대 및 식대
숙박비	54,949	임버스티 호텔 숙박비
합	203,949	

敎 育 費

項 目	金 額	內 容
印 刷 費	32,800	敎材外 기件印刷代
記 念 品	15,200	記念타을 감사장부장선물代
활 영 비	3,000	기념촬영 DP 및 현상代
次 通 費	3,000	執行部. 감사안내 및 업무연락거머비
事 務 費	2,640	노-트차 5件
감 사 의 대	2,195	외국감사지대
雜 費	3,745	執行部. 夕食 및 茶代 4분 1個
接 待 費	16,000	肉便處 接待費
숙 박 및 교통비	20,000	地方수강생. 숙박비 및 京仁 車長費
파 티 代	26,645	공강식되리. 주식 및 과자 연초代
場 所 使 用 料	10,000	女社會館 4 日間
食 事 代	15,670	수강생 및 執行部 食事 및 茶代
감 사 료	12,000	對內외 초빙 강사료
국제 활동비	11,208	교육준비연락. 국제통화료
활 동 비	15,000	敎育準備 對內 外活動費
하	189,203	
合 計	393,152	잔액 101,728 (일반회계르 이월)

國際關係

國際關係

概要

本組合의 國際活動은 지난 1年向에도 극히 活潑하여 우리 幹部들이 國際會議 參加와 外國의 同一産別 勞組와의 交流를 通해 向上發展을 期하고 特히 1967. 9. 16 日 全聯全展 勞聯 (IMF) 加入이 되어 國際産別勞聯과의 긴밀한 友誼를 유지할 것이며 本組合은 組合員 教育關係에 있어서도 先進國에 匹敵과 함께 高度의 技術習得을 도모함은 本組合 위치에서 必經해야 할 問題라 하겠다

1. 國際自由勞聯 亞洲勞動大學 年 29 期 受講生 파견

(1) 勞總國第 706 号 (66. 11. 18) 에 根據 印度 뉴델리 所在 國際自由勞聯 亞洲勞動大學第 29 期 國際講座 受講生을 本組 調査部長 李沃龍同志 추천

(2) 勞總國第 741 号 (66. 12. 12) 에 根據 同 李沃龍同志 決定 日다

가 場 所 印度 뉴델리

나 期 間 自 1967. 1. 27
至 1967. 4. 30

2) 日本全金同盟 및 國際全展勞聯 日本協議會 幹部招請

本組合 1967 年度 全國代表大會의 다음과 같이 招請

180~

하였음

다 음

1. 피조청자

日本全国金属産業 労働組合同盟

国際部長 藤 原 巖 (1967 4 27
1967. 5 3)

国際金属労联 日本協会 (I.M.F.J.C)

事務局長 瀬 戸 一 郎 (1967 6 12
1967 6 21)

日本自動車産業労働組合联合会

事務局長 赤 木 省 三 (")

日本八幡製鉄労働組合

組 長 宮 田 早 苗 (")

3. 日本全金同盟 大会参加

韓日 兩國間의 労働運動의 発展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日本
全国金属産業労働組合同盟 第17次 全国代表員大会에 다음에
本組 幹部가 参加하였음

다 음

本組 事務局長 洪 淳 模

組織部長 姜 春 吉

1967 9 21 ~ 1967 10 5

日本 金属労組와의 各種 會談을 進行하면서 韓國金属労組의
活動象을 소개하는 한편 各 地方을 巡訪하여 地方労組와의

交流도 적극 추진하였고 相互勞組는 앞으로는 發展을 위하여 활발한 접촉을 갖는데 노력하였다.

4. 國際金屬勞聯 (IMF) 加入

1966. 9. 10 本組合 全國代表大會에서 IMF에 加入할 것을 決議한바 1967. 9. 16 日 國際金屬勞聯 執行委員會에 서 韓國金屬勞組加入 案을 上程한것 끝에 加入이 確定 國際金屬勞聯 (IMF) 會員國이 되었음

5. 外國人 講師 招請

國際金屬勞聯 (IMF) 후원으로 1967. 12. 11 ~ 15 本勞組 第1回 一般勞働 教育講座에 參加한 IMF 加入確定에 따른 相互協助 問題를 協議하고서 다음과 같이 招請 來하다

다음

國際金屬勞聯 日本協議會 (IMF.JC)

副會長 伊藤 一 男

事務局長 瀬戸 一郎

1967. 12. 9 ~ 1967. 12. 17 ~ 9 -

6. 同一業種勞組交流

韓國의 起重産業勞組와 日本의 同一業種 (同一業種) 同에 交流를 本勞組와 國際金屬勞聯 日本協議會가 알선하여 一次로 起重産業勞組代表 2名이 日本의 東京 大阪 京都 奈良 等地的

~182~

産業體들을 視察하고 양국 노동단체간의 국제적인 유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반공노동단체로서의協力關係를 강화 하였다

日本訪問代表團名單

總組產業分會 分會委員長 金炳龍

總務部長 梁始鉉

期間 1969. 3. 17 ~ 3. 31

2. 國際金屬勞聯 (IMF) 第21回大會參加

69. 5. 25 스위스에서 開催되는 國際金屬勞聯 第21回 世
界大會에 會員國인 本組合 代表 1名 蔣新 通報로 本組 第3次 中
央執行委員會에서 委員長 朴世天 同志를 代表로 送定 外견할
것을 決議 現在 手續 중에 있음

其他事項

1 一線將兵慰問行事

1968 年 8 月 23 日 於 休戰線 前線고지에서 勸勉을 受
 受하고 國土 防衛하고 있는 一線將兵을 慰問코자 勞務 主管下
 에 다음과 같이 慰問行事を 하다

1. 행사명칭 一線將兵慰問

2. 目的

祖國과 未來를 지키고 있는 戰線의 우리 國軍이 艱難
 艱難과 休戰線 155 마일 戰線의 高지에서 日과 夜가 없이 國
 土를 防衛하고 있는 戰線의 將兵에게 1968 年 8 月 23 日 期하여
 未來에서 經濟 建設의 主役을 擔當 하고 있는 産業戰士인 我
 我의 勞働者가 我의 따뜻한 情心인 慰問 편지와 慰問品을 寄
 寄하고 一線將兵의 勞苦에 報答코자 本 慰問行事を 行한다

3. 慰問將兵과 日時

慰問師團 1 軍團 21 師團 (13,000 將兵)

江原道 楊口

慰問日時 1968. 年 1 月 23 日

4. 本組 에서는 慰問편지 62 枚 雜誌 92 卷 調查部長
 趙王行 同志 가다

~ 196 ~

2 북괴만행 규탄 노동자 총결기대회

1. 行幸趣向

지난날 共産黨 北 도에 앞장서 왔던 우리 百萬 労働者의 總集結
體인 韓國労働組合 總聯盟은 지난 1月 21日 서울 근교에 침
투하여 갖은 만행을 저지른 북괴 무장 공비 침입과 공해상에
있는 美 “푸에블로”호를 강제 납치한 북괴의 戰爭挑発行爲를
규탄하는 労働者 總결기 대회를 개최 그 罪惡上을 성토 규탄
하고 반공태세를 더한층 強化하기 爲하여 全國労働者 總결기대
회를 다음과 같이 갖었다

2. 行幸内容

日時 1968 年 2月 5日 10時 30分

出席人員 2,400 名

場 所 南山野外音樂堂 廣場

3. 市街行進 (丑-△)

南山音樂堂 ~ 南大門 ~ 乙支路入口 ~ 乙支路 2, 3, 4, 5街

~ 鍾路5街 ~ 和信堂 ~ 光化門 ~ 國會政事堂 ~ 市庁

~ 南大門 ~ 牛車嶺 (해산)

3 1968年労働節行事

1968年 3月 10日 労働節 慶祝記念行事도 労組 主管 委獨이
해하여 行해하였다

1 行事趣旨

열공과 建設의 役軍으로 빛나는 伝統을 지니은 韓國勞總에서
는 1968. 3. 10 이나라 二百万 愛國勞動者의 名節인 勞
動節을 맞이하여 우리의 鉄鋼같은 團結力을 内外에 과시 반공
태세를 더한층 強化하고 社會 正義구현과 복지社會建設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爲하여 汎勞動者 慶祝 行事를 다음과 같이 갖
는다

2 行事內容

(1) 中央行事는 労組主管下에 서울特別市에서 다음과 같이 行해
하다

(2) 慶祝記念行事 서울特別市 槇忠體育館에서 勞動者 및 家族
約 10,000 名

(3) 本組動員數

永登浦支部	250 名	
서울 "	150 "	
京畿 "	80 "	
新進 "	50 "	計 560 名

138~

(4) 模範組合員 副委員長 李熙鎔 同志

※ 地方 支部 및 分會는 自體行事와 市道協議會 主幹下에 記
念行事를 하다

勤勞所得稅改革鬭爭

勤勞所得稅改革鬭爭

勞總에서는 67. 8. 17 政府가 發表한 勤勞所得稅의 増稅檢과 그
세율이 勞動者의 赤字生活를 더욱 加劇하는 不當한 것이라는데 意
見을 모으고 1967. 8. 24 新聞會館大講堂에서 勤勞所得稅 改革 全
國 勞動者 代表者 集會大會를 開催하고 이에 不當性を 證明하는
한편 宣言文과 決議文을 채택 하였다

1. 日 時 1967. 8. 24

2. 場 所 新聞會館大講堂

3. 参加人員 在京組合幹部 400 名

金屬勞組 京仁地區 幹部 20 名 参加

決議文

1. 政府는 甲種勤勞所得稅의 増稅檢을 政府가 發表한 生活費額까
지 引上하고 최저 生活비선 이하의 저소득층의 生活를 돕기 위
한 社會保障制를 實施하라

2. 政府는 최저 生活비선을 基準으로 한 근로소득세 의 기초공제
제도를 設定하라

3. 政府는 外債償還에 기여하고 있는 外國機關 從業員에 對한
乙種勤勞所得稅에 關해 수출 捐納 用役等 판판사업의 경우와
같이 세액의 50% 를 減額하라

4. 우리는 과세율과 과세등급을 年稅 基準으로 존치할것을 강력

~ 192 ~

히 주장한다

5. 政府은 物價上昇의 先導的 역할을 하는 公共料金과 物品税의 無謀한 上昇을 삼가라

6. 與野政黨은 근로 소득세 增徴에 關한 선거 公約에 對하여 責任을 지라

우리는 以上 要求條件이 實現될때까지 可能한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여 汎組織的으로 強力한 斗争을 展開할 것이며 最惡의 경우에는 全國 總罷業을 決意한 이에 決意한다

1967. 8. 24.

勤勞所得稅改革全國勞動代表者發起大會

새로공포된세법요지

감종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머 리 말

감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율과 연세 점이 어떻게 개정되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던 세법개정작업은 8.000 원의 연세점으로 국회를 통과 정부에서 11월 29일자에 법률제 1966 호로 공포함으로써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소득세 법에서는 우리 노동자에게 어떠한 세금을 얼마나 내도록 안들였을까? 이제 감종근로 소득세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세의 부과 범위

먼저 감종근로 소득세란 어떤것이여 어떠한 범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법 제 4 조에 보면 과세소득의 범위가 밝혀져 있는데 ① 부동산소득 ② 배당이자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기타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감종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중의 하나입니다 즉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94~

즉 ①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② 전시간로 동원병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상이질병자 또는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④ 학자금 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실비 번산적 성질의 지급액등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①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속이 받는 급여 ② 국외에서 군로를 제공받는 급여 다만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제외한다 ③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급여입니다

감중근로소득세율

감중근로 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졌을 까요 종전에는 2만원분 분기점으로 5단계의 세율을 만들었으나 이번개정된 법은 1만5천원을 분기점으로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5천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로만들어 저소득자에 대한 파세액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즉 법제 27조 3항의세율을 보면 감중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을 할리할 때 아다 ①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③ 기타의 경우에는 별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이 1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 산출

세액에서 1만 5천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백분의 3을 공
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율》

1만 5천원 이하의	금액	100 분의 7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	100 " 9
2만원을 초과하는	"	100 " 16
3만원을	"	100 " 18
4만원을	"	100 " 30
6만원을	"	100 " 40
8만원을	"	100 " 50

그런데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금 또는 시간금으로 지급 받는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의
부담에 불구하고 그 소득 금액의 100 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면세

과세할 수 있는 최저한도선 즉 면세점은 얼마이겠습니까? 법
제 57 조에 의하면 ◇ 퇴직금은 5만원 (실지 받는데 159,999 원
까지) ◇ 일금 또는 시간금 월 400 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
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기타 8천원으로 되어

~ 196 ~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 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제기하는 금액에 「미달」 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연세액은 법제 11조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갖고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인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제 11조에 의하면 총소득액이 절반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20만원의 퇴직금만을 받을 경우 그 절반액인 10만원을 갖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반을 따져 8만원 미달이 되면 연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진것은 주택자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방기판에 주택부금으로 예입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매월 소득이 3만 5천원 이하 인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세금계산 방법

그러면 이상의 원칙에 의하여 각종세금의 계산방법을 설치로 하여 모겠습니다

《월 금》

우리가 매달받는 월금의 세금계산방법을 예시 하겠습니다.

첫째 --- 연세점이 8,000 원 이월이므로 7,999 원까지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8,000 원 부터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8,500 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를 예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8,500 원에 계산해야 할 세율을 알아야
있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1만 5 천 원 이하자는 7% 라고 규정되었습
니다 8,500 원은 7% 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8,500 원에
0.07 을 곱하면 595 원이 됩니다

이것이 세액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하면 1만 5천원 미만
소득자에게는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실소득액을 제한
차액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5,000 원에서 8,500 원을 빼면 차액은 6,500
원이 됩니다

이 6,500 원에 0.03 을 곱하면 195 원이 됩니다 이
195 원이 공제액 이므로 앞서계산한 595 원의 세액에서 제
해야 합니다

즉 595 원에서 195 원을 제하면 400 원이 실지로 내게

~199~

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23,000 원을 받는다고 하면 1만 5 천원 이상이므로 공제의 혜택은 없게 되어 세율을 「제차」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2만 3 천원의 세금계산은 번에 의하면 1만 5 천원 이하는 0.07 1만 5 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0.09 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0.16 이므로 세율을 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0 \times 0.07) + (5,000 \times 0.09) + (3,000 \times 0.16) =$$

1,980 원 즉 세율표상에 따라 계산하여 합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 직 금》

공무원이나 군인이 받는 일시퇴직금액과 연금을 제외한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퇴직 금액나 연금은 파거와 같이 월평균 계산이란 복잡한 방법을 지양하고 받는 총금액액을 세율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세점을 미달하는 금액액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세점은 실지로 얼마를 받으면 해당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 199~

퇴직 급여의 면세점은 8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8만원이란 실지로 8만원을 받는 액수가 아니라 실지 급여액이 50%에 해당하는 액이므로 실지급여는 16만원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만 9천9백 9십9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16만원부터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만원을 퇴직급여로 받을 경우의 세금계산을 예시하면 우선 2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만원의 50%는 10만원입니다. 이 10만원이 과세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율은 50% 이므로 50%인 5만원이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월 급여를 계산하듯 이것도 「체차」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산식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 (15,000 \times 0.07) + (5,000 \times 0.09) + (10,000 \times 0.16) + (10,000 \\ & \times 0.18) + (20,000 \times 0.3) + (20,000 \times 0.4) + (20,000 \times 0.5) \\ & = 28,900 \text{ 원} \end{aligned}$$

《상여금》

상여금 계산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세점에

~ 2.10 ~

대당하는 시금의 상여금 계산과 하나는 연세전 이상자의 상여금 계산 방법입니다

첫째 --- 연세전 이하자의 상여금은 그달의 월평균액과 상여금을 합하여 시금을 계산합니다 즉 2999 원의 월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여금을 3,000 원을 받았다고 하면 2,999 원에다 3,000 원을 합한 10,999 원을 갖고 시금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정우의 세금산식은 다음과 같을것입니다

$$10,999 \times 0.07 + (15,000 - 10,999) \times 0.03 = 650 \text{ 원}$$

둘째 --- 연세전 이상자의 상여금은 상여금액 총액을 그기간의 월평균을 내서 그 기간중의 월평균액액과 합산 시금을 계산합니다
그러하여 이를 합한다음 이미 낸 시금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여기 10,000 원에서 12,000 원 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 12,000 원의 상여금 (6개월분)을 받았다면 먼저 월평균 상여를 산출하면 12,000 원 나누기 6이 되므로 월평균 2,000 원의 상여금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상여지급 대상기간중에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과 합제한 금액에 시금을 공제하라 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즉 6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6월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 201~

예를 들면 1월에 1만원 2월에 1만1천원 3월에 1만5백원
4월에 1만 2천원 5월에 1만1천5백원 6월에 1
만 2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합한 총액 6만 7천원을
6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월평균 급여액은 11,166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월평균 급여액을 합한 13,166 원을 갖고 앞서
예거한 세율을 적용 세대를 계산한 다음 이것을 6으로 곱하
면 모두 5,166 원의 세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납부한 세금 4000원을 빼면 1,166 원의 세
금만 새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입니다

(상여금 ÷ 기간 + 월급여총합 ÷ 기간) × 세율 × 기간 - 이미납부
한 세액 = 세금)

備品目録

品名	数量	取得年月日	価格	備考
의자	1	1981. 9. 2	120	職員用
책상	1	" "	500	總務部長用
나룻	1	" 12. 30	1,500	
사진가구	1	62. 1. 11	60	申告用비치용
캐비넷	1	" " "	3,700	서쪽함
책상대	1	" 9. 7	1,000	委員長用
가리방	1	" "	1,200	문실
책상中	1	" "	650	職員用
의자	2	" "	950	委員長 事務局長用
주판	1	62. 2. 12	250	
후피개	1	" 5. 3		廣南支部에서 증점
책상	1	" 5. 13	700	事務局長用
의자키바	4	" 6. 1	1,200	위원장 사무국장 내빈소파
음판	1	" 7. 12	300	
절재함	1	" " "	200	
회전의자	2	" 10. 7	850	
사진각구	1	63. 11. 29		大韓電線分會기증

品 名	数量	구입년월일	価 格	備 考
카비넷	1	64. 1. 13	3,100	서류보관
水 의 자	2	" . "		永登浦支部기증
책 상 中	1	65. 6. 15	900	직원용 급사용과 대치
의 자	2	"	800	사무국장 중무부장용대치
의 자카바	3	66. 6. 4	850	
打 字 機	1	" 12. 20	14,000	
때 計	1	" 12. 6		日本金金同盟에서 기증
電 話 機	1	67. 5. 14		(28) 9947
보 토	1	67. 12. 24	11,000	
응접대외자	8	"	6,400	
" 탁자	1	"	1,200	
" 재터리	1	"	1,500	